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부제출(의안번호 제12656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개요	1
-------------	---

II. 주요 내용별 검토	4
---------------------	---

1. 합병 및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에 합병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 추가(정부안)	4
2. 사회적기업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상향(정부안)	11
3.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신설(정부안(2)) ..	21
4.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김미애의원안, 김기표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최 은석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윤종오의원안, 정부안)	40
가. 연혁	46
나. 검토의견	51
5.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에 따른 미제출 가산세 시행시기 유예(정부안)	65
6. 연결납세제도 보완 등	69
가. 연결납세제도 개요	69
나. 연결납세제도 보완(정부안)	72
7.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식 합리화(정부안)	87
8.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및 정의 명확화(정부안)	105
9.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제출시 과태료 신설(정부안)	110
10. 외국법인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 의무신설(정부안)	114

I. 개요

1. 정부안(의안번호 제1265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부
- (2) 제 안 일 : 2025. 9. 3.
- (3) 회 부 일 : 2025. 9. 4.

나. 제안이유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회 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높이고,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안 제24조제3항)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율을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함.

나.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신설(안 제51

조의2제1항 및 제2항)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그 배당을 받은 주주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다. 법인세 세율 조정(안 제55조제1항)

1)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는 10퍼센트,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세율을 각각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2)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00억원 이하는 20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세율을 각각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라.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합리화(안 제76조의9제2항 및 제76조의12제2항)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 후 5년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이 취소되거나 연결자법인이 배제되는 경우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결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나, 그 결손금에 대하여 이미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합리화(안 제93조제2호 및 제10호)

1) 외국법인이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도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함.

2)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에 포함하도록 함.

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 미제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안 제94조의2제4항 및 제124조제2항 신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외국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라.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51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합병 및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에 합병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 추가(정부안)

현 행	개정안
□ 의제배당(제16조) ○ 정의: 다음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간주 ○ 유형 ①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③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한 불균등증자 시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④ 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⑤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⑥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	□ 합병 및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에 합병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 추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합병대가의 범위 ①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 합병법인의 주식 - 합병법인의 완전모회사인 <u>내국법인</u>의 주식 ② 금전 또는 그밖의 재산가액 ○ 분할대가의 범위 ①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 - 분할 신설법인의 주식 -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 -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모회사인 <u>내국법인</u>의 주식 ② 금전 또는 그밖의 재산가액	○ 합병대가의 범위 ①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 (현행과 같음) - 합병법인의 완전모회사인 <u>법인</u>의 주식 ② (현행과 같음) ○ 분할대가의 범위 ①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모회사인 <u>법인</u>의 주식 ② (현행과 같음) ○ 시행일: 2026. 1. 1.

*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6)

□ 개정안은 합병대가 중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에 합병법인의 완전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을 추가하고 분할대가 중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에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을 추가하려는 것임.

□ 의제배당이란 현금배당이나 주식배당 등과 같은 「상법」상 배당은 아니지만 주주가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받게 될 때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미함.¹⁾

1) 법인세법 집행기준 16-0-1

현행법상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 존속 시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 배당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함.²⁾³⁾

□ 한편, 2011년 「상법」 개정에 따라 합병 시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존속회사의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삼각합병이 가능해졌고⁴⁾, 2016년 「상법」 개정에 따라 분할합병 시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모회사 주식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삼각분할합병 제도가 도입되었음.

이러한 「상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1년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합병대가에 삼각합병에 따라 취득하는 합병법인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추가하였고, 2016년에는 분할대가에 삼각분할합병에 따라 취득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모회사의 주식

2)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14. "피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을 말한다.
15. "분할법인"이란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분할되는 법인을 말한다.
16. "분할신설법인"이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3)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아래 예시의 B에 해당함.

분할합병 전: $A(1+2) + B(3) \rightarrow$ 분할합병 후: $A(1) + C(2+3)$

A=분할법인, B=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C=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4) 예를 들어 甲회사의 자회사인 乙회사가 丙회사를 합병하면서 소멸하는 丙회사의 주주에게 모회사인 甲회사의 주식을 교부

을 추가하였음.⁵⁾

□ 그런데 「법인세법」 제16조⁶⁾는 합병대가를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호 및 제8호 등에 따르면⁷⁾,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제5호)

5)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44조 및 제46조에서 합병대가와 분할대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합병대가: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2. 분할대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6)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5.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44조 및 제46조에서 합병대가와 분할대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합병대가: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2. 분할대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7)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

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8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반면,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제8호)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삼각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의 완전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이 합병대가 중 '주식등'에 해당하여 취득가액 계산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해당하여 같은 항 제8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해석이 모호한 측면이 있음.

을 더한 금액

- 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8.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8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8.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

또한, 삼각분할합병 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모회사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함.

- 최근 내국법인(A)이 자회사(B)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D)으로부터 분할합병의 대가로 그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C)를 제공받았는데, 분할합병에 따라 취득한 외국법인(C)의 주식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이 아닌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으로 보아, 취득가액 계산 시 기존 피합병법인의 주식의 장부가액이 아닌 완전모회사 주식의 시가를 활용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 주식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경정청구를 하였음.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의 취지 및 합병분할과세체계를 고려해⁸⁾ 분할합병의 대가로 지급받은 외국모회사 주식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으로 해석하였고, 따라서 취득가액 계산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시가가 아닌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종전 장부가액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음.

- 개정안은 삼각합병 및 삼각분할합병에 따라 취득하는 완전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내국법인인 경우와 동일하게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의 주식등’ 및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등’으로 규정함으로써 자

8)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00(2024. 12. 24.)

산의 취득가액 계산 시 종전 장부가액을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16조제2항은 기획재정부의 예규⁹⁾와 달리 열거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만, 납세자의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완전모회사의 국적에 따라 과세방식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54

9)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00(2024. 12. 24.)

2. 사회적기업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상향(정부안)

현행	개정안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24조) ○ 기부금 - 정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 지출한 금액 - 종류: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기타 ○ 특례기부금 - 종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등 - 손금산입한도율: 50% ○ 일반기부금 - 종류: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특례기부금 제외) - 손금산입한도율: 10% (단, 사회적기업은 <u>20%</u>) ○ 기타 - 정의: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외의 기부금 - 손금산입한도율: 0%(손금불산입)	☐ 사회적기업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상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일반기부금 - (현행과 같음) - 손금산입한도율: 10% (단, 사회적기업은 <u>30%</u>) ○ (현행과 같음)

*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6)

☐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일반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10%p 상향하려는 것임.

□ 기부금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의미함.

기부금의 지출은 법인의 순자산 감소를 초래하지만 해당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손금의 요건으로서의 사업 관련성을 충족하지 못해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산정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기부 활성화 등을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익성의 정도 및 기부주체 등에 따라 일정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현행법 제24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기준으로 ① 특례기부금, ② 일반기부금 및 ③ 위 2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음.

[기부금 유형별 범위]

구 분	구체적 범위
특례기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사립학교 등 교육기관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국립대학병원 등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
일반기부금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법인 등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유치원의 장, 학교의 장,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
기타기부금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 이외의 기부금

① 특례기부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으로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50%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② 일반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 등 공익성 있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으로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손금 산입한 특례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¹⁰⁾이 지출한 일반기부금에 대해서는 10%p 높은 20%의 손금산입한도를 적용하며, ③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있음.

[법인기부금 제도 연혁]

시행연도	주요 변경사항
2005	·법정기부금 소득공제(손금산입) 한도 축소(100→75('06~'08)→50%('09~)), 법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초과금액의 이월공제 기간 신설(1년)
2011	·지정기부금 소득공제(손금산입) 한도 확대(5→10%), 기부금 구분 체계 간소화, 기부금을 구분하는 공익성 기준 명확화
2012	·법정기부금 소득공제(손금산입) 한도액 초과금액의 이월공제 기간 확대(1 → 3년)
2014	·법정기부금 소득공제(손금산입) 한도액 초과금액의 이월공제 기간 확대(3 → 5년)
2018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변경
2019	·사회적기업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확대(10%→20%)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기간 확대(5년→10년)

10)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시행 연도	주요 변경사항
2020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월된 기부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
2021	·기부금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던 용어 삭제 (법정기부금을 50% 한도 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을 10% 한도 기부금으로 지칭)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한도 규정
2023	·50% 한도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10% 한도 기부금을 일반기부금으로 명칭 변경
2025	·특례기부금 대상에 의료기술협력단 기부금 추가

□ 한편,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의미함.

2024년 12월 기준 총 4,829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¹¹⁾되었고 이 중 3,762개 기업이 현재 운영 중이며, 789개 기업(21.0%)은 비영리법인의 형태로, 2,973개 기업(79.0%)은 상법상 회사 등 영리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11)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 ①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의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③ 사회적 목적 실현(30% 이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 ④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 ⑤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
- ⑥ 정관, 규약 등을 갖출 것
- ⑦ 회계연도별 배분가능한 이익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회사·합자조합만 해당)

[사회적기업 인증 및 운영현황(연도별)]

(단위: 개)

구분	'07~'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계
신청	2,068	481	427	326	306	372	555	519	657	532	526	335	7,104
인증	1,080	265	295	265	256	312	392	429	500	428	371	236	4,829
현재 운영	628	164	189	190	191	248	321	375	452	404	364	236	3,762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조직형태별 사회적기업 현황]

(단위: 개, %)

비영리 789개소 (21.0%)					영리 2,973개소 (79.0%)			
민법상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 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기타법인 및 단체	상법상 회사	농(어)업 회사법인	영농(어) 조합법인	협동 조합
311 (8.3%)	54 (1.4%)	71 (1.9%)	353 (9.4%)	- (0.0%)	2,349 (62.4%)	188 (5.0%)	109 (2.9%)	327 (8.7%)

주: 괄호 안은 전체 사회적기업 수 대비 비중임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이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한도를 확대하여 사회적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인 취지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영리 사회적기업의 경우 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재투자하여야 하므로¹²⁾, 손금산입 확대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공익적인 목적에 재투자하여 사회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일반기업에 비해 높은 손금산입한도를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됨.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르

1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면 사회적기업은 배분 가능한 이윤을 ① 임금 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②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 사업, ③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등의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우선 사용하여야 함.

그런데 2023년 기준 전체 사회적기업의 32.5%가 당기순손실을 경험하였고 당기순이익이 3천만원 이하인 기업이 33.6%에 달하는 등 경영여건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더라도 그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세부담 경감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적 목적의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0년 사회적기업 당기순이익(손실) 분포]

(단위: 개, %)

구분	5억 원 이상	3억 원 ~ 5억 원	1억 원 ~ 3억 원	5천만원 ~ 1억 원	3천만원 ~ 5천만원	0원 ~ 3천만원	-1천만원 ~ 0원	-5천만원 ~ -1천만원	-5천만원 미만	합계
개수	83	95	387	333	306	1,193	183	488	487	3,555
비율	2.3	2.7	10.9	9.4	8.6	33.6	5.1	13.7	13.7	100.0

주: 당기순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3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2024.11.

둘째,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¹³⁾에 대한 일자리 공급¹⁴⁾ 및 사회서비스

13) 13)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제공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육성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유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23년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유형별 사회적기업(사회서비스 제공형 및 혼합형) 수를 분석한 결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479개, 일반인이 수혜대상인 기업은 178개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약 2.7배 정도 많았음.

또한,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이 고용한 전체 유급근로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23년 기준 사회적기업이 고용한 유급근로자 71,950명 중 64.5%인 46,385명이 취약계층으로서 취약계층의 고용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¹⁵⁾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14)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는 복합적인 정책목표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일자리창출,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어 왔음. 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 설정되어 있음.

1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3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2024.11.

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¹⁶⁾에 따르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최초 소득 발생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세액감면 혜택이 부여되고,¹⁷⁾ 「부가가치세법」 제26조¹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와 제36조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용역과 교육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또한, 사회적기업(상법상 회사의 경우 중소기업에 한정)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6)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생략)

17) 참고로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18)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0%를 감면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25%를 경감함.¹⁹⁾

둘째,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2025년 284억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민간시장 진입단계별 맞춤형 판로지원, 3단계(초기 경영지원→사업화 및 전문화→사업 확장 및 시장 진출) 성장 지원체계 마련 등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셋째, 정부는 2018년에도 본 개정안과 동일하게 사회적기업이 지출하는 일반기부금(당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율²⁰⁾을 30%로 확대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으나, 조세소위 논의과정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손금산입한도율을 10%에서 30%로 상향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확대규모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0) 2018년까지는 사회적기업도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일반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율이 10%였음.

려하여 손금산입한도율을 20%로 수정하여 의결한 점을 참고할 필요
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3.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신설 (정부안(2))

현 행	개정안
□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 대상: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등 ○ 내용: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코넥스상장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단, 기금운용법인의 경우 배당소득 비과세 미적용) ○ 출자방식: ① 직·간접* 출자 * 벤처투자조합등 ②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 <u><신 설></u> ○ 출자방법: -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 - 기업이 설립된 후 <u>7년</u> 이내에 유상	□ 비과세 적용대상에 벤처투자회사의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간접출자분 추가 ○ 대상: (현행과 같음) ○ 내용: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코넥스상장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단, 기금운용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①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과 ②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 ○ 출자방식: ① 직·간접* 출자 * 벤처투자조합등 ②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 ③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간접출자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 출자방법: (현행과 같음) 단,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간접출자의 경우, 코넥스상장

현행	개정안
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 납입 - 기업이 설립된 후 <u>7년</u> 이내에 잉여금의 자본전입 - 기업이 설립된 후 <u>7년</u> 이내에 채무의 자본전환 -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 (한도: 납입한 증자대금의 30%) * 코넥스상장기업일 경우 7년 이내 → 2년 이내 ○ 적용기한: <u>2025. 12. 31.</u>	<u>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 출자 시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u> ○ 적용기한: <u>2028. 12. 31.</u> ○ 시행일: 2026.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 13조의2) ○ 대상: -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 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주식·출자지분(특수관계인 주식·출자지분 제외)을 취득한 내국법인 * 단,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 등 제외 ○ 출자방식별 공제율: - 직·간접* 출자(제1항): 주식·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 *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출자(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제외) <신 설>	☐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벤처투자회사의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간접출자분 추가 ○ 대상: (현행과 같음) ○ 출자방식별 공제율: - 직·간접 출자(제1항): (현행과 같음) - <u>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간접출자(제2항):</u> 주식·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

현 행	개정안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 (제2항): 출자금액*의 5% + 증가분**의 3% * Max (①취득가액, ②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투자액의 60%) ** 해당연도 벤처기업 투자금액 - 직전 3년 평균 벤처기업 투자금액 ○ 출자방법: 해당 기업 설립 시 자본금 납입 또는 해당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 납입 ○ 적용기한: <u>2025. 12. 31.</u>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 (제3항): 출자금액의 5% + 증가분의 <u>5%</u> ○ 출자방법: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28. 12. 31.</u> ○ 시행일: 2026.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
☐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타인 소유 주식·출자지분 매입 취득제외) -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창업기획자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 (생략) <u><신설></u>	☐ 벤처투자회사의 투자목적회사 배당소득 비과세 신설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현행과 같음) ○ <u>벤처투자조합이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다</u>

현 행	개정안
○ 조합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 - 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 ○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계산 -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 한정)을 뺀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함 ○ 적용기한: <u>2025. 12. 31.</u> ☐ 증권거래세의 면제(제117조) ○ 적용기한: <u>2025. 12. 31.</u>	<u>음 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비과세</u> - <u>벤처투자목적회사가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u> - <u>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u> ○ 조합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 - 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u>단,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u>) ○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계산: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28. 12. 31.</u>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 ☐ 면제대상에 <u>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창업기업, 벤처기업, 코넥스상장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추가</u> ○ 적용기한: <u>2028. 12. 31.</u> ○ 시행일: 2026.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직접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

현 행	개정안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세법」 제51조의2) ○ 대상: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 등 ○ 요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 배당가능이익 = 당기순이익 + 이월이익 잉여금 - 이월결손금 - 이익준비금 ○ 중복배제: - 원칙: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적용 배제 - 예외: ①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기업으로서 동업자들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u><신 설></u>	□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벤처투자회사의 투자목적회사 추가 ○ 대상: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목적회사, <u>「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등</u> ○ 요건: (현행과 같음) ○ 중복배제: ○ 원칙: (현행과 같음) - 예외: ① (현행과 같음) <u>②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4항·제5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u> ○ 시행일: 2026.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정부안(「조세특례제한법」)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정부안(「법인세법」)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6)

□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등 모험자본(Venture Capital) 회사, 일반

내국법인 또는 개인이 벤처기업, 창업기업 등에 투자하고자 할 때,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출자하는 경우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이하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출자하는 경우에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을 적용하기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17조와 「법인세법」 제51조의2를 개정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①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한 간접출자로 취득한 벤처기업 등의 주식·지분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안 제13조), ② 내국법인이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의 5% 세액 공제(안 제13조의2), ③ 벤처투자목적회사가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 등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 비과세(안 제14조), ④ 벤처투자목적회사가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안 제117조) 등 조세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목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개인 또는 벤처투자회사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12653)」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벤처투자목적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액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벤처투자목적회사에 대

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제52조²¹⁾는 벤처투자조합이 자금차입을 통해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벤처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투자나 인수·합병 등 대규모 자금에 필요한 상황에서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벤처투자조합이 직접 차입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던 이유로는 차입에 따른 담보를 설정해야 할 경우 벤처투자조합의 자산을 담보로 설정해야 하므로, 「상법」 제86조의2²²⁾에 따라 유한책임조합원이 출자금의 범위에서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출자자 보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²³⁾

이에 벤처투자조합의 한정된 재원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스케일업,

2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2조(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벤처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2. 자금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4.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제2항제4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④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그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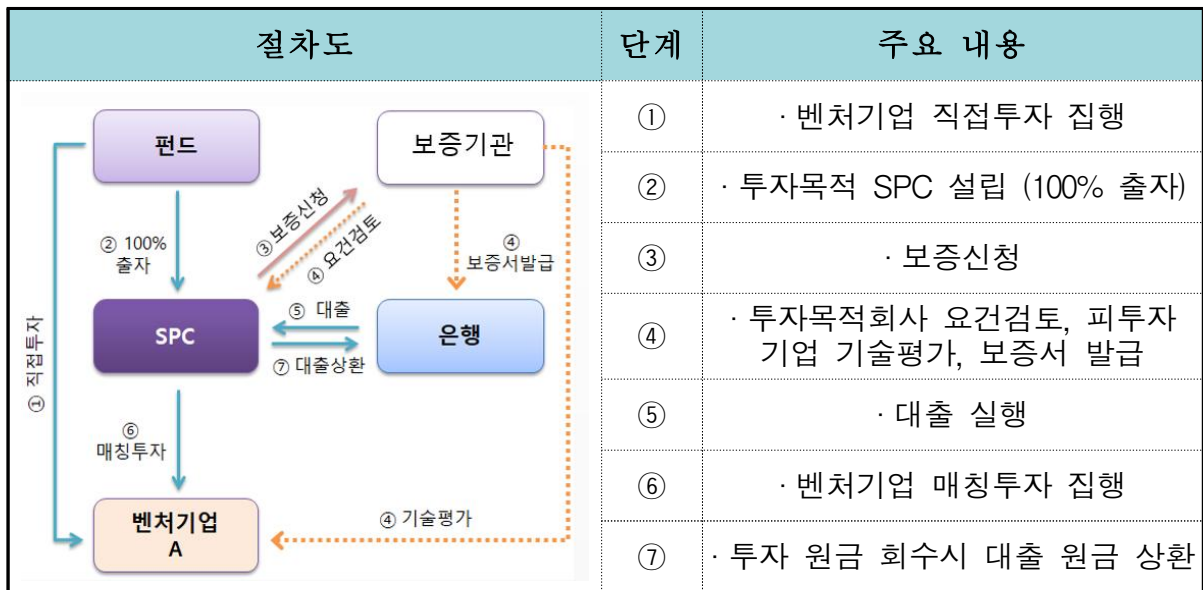
22) 「상법」

제86조의2(의의)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8182) 검토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2023. 2.

M&A 등을 차입을 통해 해결하는 한편 투자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2023년 6월 자금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벤처투자조합의 재원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벤처투자법」 개정이 이루어짐.

[벤처투자목적회사 설립 및 자금 차입조달 절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벤처투자목적회사²⁴⁾를 설립할 수 있고, 이때 벤처투

2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1.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2. 벤처투자조합이 단독으로 100퍼센트 출자한 회사일 것
 3.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회사 재산의 운용을 위탁할 것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사원이 출자할 수 있다.
1.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③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31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549조제2항제2

자목적회사는 벤처투자조합이 단독으로 100% 출자해야 하며, 벤처투자목적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모펀드처럼 자기자본의 400%의 차입 제한이 이루어지고, 차입금을 포함한 벤처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이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벤처투자조합과는 별도로 60%의 투자의무비율을 부여함.²⁵⁾

□ 개정안은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한 벤처투자에 대하여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투자와 동일한 수준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첫째,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활용한 모험자본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금융기관의 차입이 가능한 벤처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차입재원

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투자목적회사는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한도,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 산정방식과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투자목적회사 업무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제52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투자조합"은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⑥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보증지원을 할 수 있다.

2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①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제35조제7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설립하는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0퍼센트를 말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 산정방식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투자회사"는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③ 법 제5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④ 법 제51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인수·합병되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임원 및 대주주를 말한다.

⑤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 중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 수와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49인 이하여야 한다.

⑥ 법 제51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한도는 해당 투자목적회사 자기자본의 4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⑦ 투자목적회사는 단일 법인이나 단일 사업에 대한 투자(투자금액의 전부를 한꺼번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목적으로 그 재산을 운용해야 한다.

을 바탕으로 하는 레버리지 벤처투자를 허용하고 이에 대하여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출자금 세액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할 경우 기대수익률 상승에 따른 모험자본 공급 촉진을 기대할 수 있어 보임.

또한, 벤처투자조합과 벤처투자목적회사는 회계상·법률상 절연되어 투자목적회사의 설립목적인 투자행위에 관한 부채 및 현금흐름은 투자목적회사에만 귀속되어 위험의 분산이 가능하고, 벤처투자조합의 본래 투자사업과의 수익성 및 위험성과 무관하게 벤처투자목적회사 자체로의 자금조달 및 신용 관리가 가능하며, 투자목적이 달성되면 자금 회수 및 청산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둘째, 특수목적회사(SPC)는 단순한 도관의 성격을 가지므로 벤처투자 단계에 추가되더라도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세부담이 증가하게 될 경우 벤처투자목적회사의 도입취지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있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한 벤처투자에 대하여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투자와 동일한 수준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조세중립성을 유지하려는 취지인데, 개정안의 입법취지 달성을 위해서는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개정안 제13조제5항은 기금운용법인등²⁶⁾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26)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①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②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기금운용법인등의 벤처투자에 대해서는 개인의 벤처투자과 동일하게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①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한하여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기획재정부도 이에 동의하는 입장임.

또한, 현행법 제13조²⁷⁾는 코넥스상장기업의 경우 설립 이후 2년 이

중소기업중앙회 등)

27)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를 적용할 때 출자는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은 직접 또는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전입)하는 방법
4.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5. 제2호에 따라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 다만, 제2호에 따라 납

내에 출자하는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안 제13조제4항제2호가목의 수정이 필요함.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④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④ ----- ----- ----- -----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다음 각 호의 ----- ----- ----- ----- ----- -----.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④ (개정안과 같음)
<신설>	1.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	1. (개정안과 같음)

입한 증자대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를 적용할 때 출자는 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직접 또는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코넥스상장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이 상장된 후 2년 이내에 유상증자(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상장된 후 2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전입)하는 방법
3. 해당 기업이 상장된 후 2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4. 제1호에 따라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 다만, 제1호에 따라 납입한 증자대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신설>	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2.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17조에서 같다)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가.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나. 가목에 따른 출자	2. ----- ----- ----- ----- ----- ----- ----- ----- ----- 가.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코넥스상장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나.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신설>	로 인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금액 ⑤ 기금운용법인등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제4항제2호 각 목의 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으로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기금운용법인등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제4항제2호가목의 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으로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둘째, 개정안은 최종 수익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벤처투자목적회사의 배당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제51조의2를 개정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이 이중과세 조정의 성격뿐만 아니라 조세특례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법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현행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²⁸⁾을 위하여 법인단계조정제도와 주주단계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법인단계에서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배당금액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내국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²⁹⁾

28) 법인이 얻은 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세후소득을 배당하면 다시 주주에게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인지에 대하여 독립과세론과 통합과세론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통합과세론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가 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조정하고 있음.

29)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제도]

구 분	제 도	내 용
법인단계 조정제도	동업기업 과세특례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3호)	동업기업이 동업기업 과세특례 신청을 하면 동업 기업에는 과세하지 않고, 동업기업의 소득을 손익 분배비율로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동업자에게만 과세하는 제도
	배당소득공제 (「법인세법」 제51조의2)	투자회사 등의 명목상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제도
주주단계 조정제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8조의2)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 당금액 중 일정액을 익금에서 제외시키는 제도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액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 조정)
	배당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6조)	개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법인단 계에서 부담한 법인세를 더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 산하고, 산출세액에서 배당소득에 더한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납입받은 자금을 특정한 방법으로 투자 또는
운용하고 그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그대로 투자자인 그 주주 또는
사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일반법인
과는 달리 투자수익을 그대로 주주 등에게 배당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도관회사임.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소득 공제제도는 사실상 도관에 불과한
법인에게 과세하지 않고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출자자들에게 과세
함으로써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취지를 지니고 있음.

따라서 소득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도관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하고³⁰⁾, 배당을 받은 주주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음.³¹⁾

개정안은 ①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에 벤처투자목적회사를 추가하는 한편, ② 개인 또는 벤처투자회사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12653)」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벤처투자목적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액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벤처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먼저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 등과 같이 프로젝트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고 이익의 대부분을 투자자에게 배분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도관에 불과한 점, 벤처투자목적회사에 대해 배당소득 공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벤

30)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 8.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들을 말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31) 단,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처기업 등에 출자하고 그에 따른 투자이익을 배당받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벤처투자회사 등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12653)」 제13조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인 단계에서 과세할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①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에 벤처투자목적회사를 추가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볼 수 있음.

다만, ② 개인 또는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목적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액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12653)」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각종 벤처투자목적회사 관련 조세특례와 연동되어 있는 조세특례³²⁾에 해당하고, 벤처투자목적회사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종료될 경우 개정안에 따른 예외조항 역시 함께 삭제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법인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다른 벤처투자 관련 조세특례 제도와 함께 성과평가 및 제도개선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참고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³³⁾의 경우 당

32)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등의 중과세(重課稅)를 말한다.

초 「법인세법」에서 규정하였으나 2020년 세법개정 당시 동 제도의 조세특례적 성격을 감안하여 적용기한을 설정함과 동시에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54

3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뺀 금액을 최초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월된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최초로 이월된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금액을 순서대로 뺀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월된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 본문 및 제4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배당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

1. 이월공제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보다 먼저 공제할 것
2. 이월공제배당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이월공제배당금액부터 공제할 것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4.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김미애의원안, 김기표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윤종오의원안, 정부안)

현 행	김미애의원안	최은석의원안																																								
☐ 과세표준 및 세율(제55조) ○ 내국법인 <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2억원 이하</td><td>9%</td></tr><tr><td>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td>19%</td></tr><tr><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21%</td></tr><tr><td>3천억원 초과</td><td>24%</td></tr></table>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200억원 이하</td><td>19%</td></tr><tr><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21%</td></tr><tr><td>3천억원 초과</td><td>24%</td></tr></table>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	☐ 과세표준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 내국법인 <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5억원 이하</td><td>10%</td></tr><tr><td>5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20%</td></tr><tr><td>3천억원 초과</td><td>22%</td></tr></table>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과세표준	세율	5억원 이하	10%	5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0%	3천억원 초과	22%	☐ 과세표준 단순화 및 세율 인하 ○ 내국법인 <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2억원 이하</td><td>8%</td></tr><tr><td>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td>18%</td></tr><tr><td>200억원 초과</td><td>20%</td></tr></table>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200억원 이하</td><td>19%</td></tr><tr><td>200억원 초과</td><td>20%</td></tr></table> ○ 시행일: 2026. 1. 1. ○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은 종전규정 적용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8%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8%	200억원 초과	20%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20%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																																									
과세표준	세율																																									
5억원 이하	10%																																									
5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0%																																									
3천억원 초과	22%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8%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8%																																									
200억원 초과	20%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20%																																									

김기표의원안	안도결의원안	윤종오의원안																																																						
☐ 최고세율 인상 ○ 내국법인 <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2억원 이하</td><td>9%</td></tr><tr><td>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td>19%</td></tr><tr><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21%</td></tr><tr><td>3천억원 초과</td><td>25%</td></tr></table>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200억원 이하</td><td>19%</td></tr><tr><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21%</td></tr><tr><td>3천억원 초과</td><td>25%</td></tr></table>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5%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5%	☐ 상위 2개 과세표준 세율 인상 ○ 내국법인 <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2억원 이하</td><td>9%</td></tr><tr><td>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td>19%</td></tr><tr><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22%</td></tr><tr><td>3천억원 초과</td><td>25%</td></tr></table>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200억원 이하</td><td>19%</td></tr><tr><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22%</td></tr><tr><td>3천억원 초과</td><td>25%</td></tr></table> ○ 시행일: 2026. 1. 1. ○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은 종전규정 적용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	☐ 상위 3개 과세표준 세율 인상 ○ 내국법인 <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2억원 이하</td><td>9%</td></tr><tr><td>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td>20%</td></tr><tr><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22%</td></tr><tr><td>3천억원 초과</td><td>25%</td></tr></table>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200억원 이하</td><td>20%</td></tr><tr><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22%</td></tr><tr><td>3천억원 초과</td><td>25%</td></tr></table> ○ 시행일: 2026. 1. 1.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5%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5%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																																																							

윤준병의원안, 정부안																					
☐ 전구간 세율 인상 ○ 내국법인 <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2억원 이하</td><td>10%</td></tr><tr><td>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td>20%</td></tr><tr><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22%</td></tr><tr><td>3천억원 초과</td><td>25%</td></tr></table>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200억원 이하</td><td>20%</td></tr><tr><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22%</td></tr><tr><td>3천억원 초과</td><td>25%</td></tr></table>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윤준병 의원안) 2026. 1. 1.(정부안)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 하는 사업연도부터 적 용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																				

* 김미애의원안 2024. 8. 8. 발의(의안번호 2639), 김기표의원안 2025. 7. 29. 발의(의안번호 11816), 안도걸의원안 2025. 7. 31. 발의(의안번호 11898), 최은석의원안 2025. 8. 4. 발의(의안번호 11961), 윤준병의원안 2025. 8. 20. 발의(의안번호 12269), 윤종오의원안 2025. 8. 29. 발의(의안번호 12528),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6)

□ 개정안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법인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김미애의원안은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로 단순화하면서 5억원 이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10%, 5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서는 20%, 3천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최은석의원안은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로 단순화하면서 2억원 이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8%,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서는 18%, 2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김기표의원안은 3천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의 적용 세율을 1%p 인상하려는 것임.

안도걸의원안은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과 3천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의 적용 세율을 1%p 씩 인상하려는 것임.

윤종오의원안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 3천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의 적용 세율을 1%p 씩 인상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안과 정부안은 전 과세표준 구간 적용 세율을 1%p 씩 인상하려는 것임.

또한, 2024년 세법개정 이후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³⁴⁾에 대

34)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

해서는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김미애의원안³⁵⁾을 제외한 개정안은 일반 세율에 맞추어 이를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단, 최은석의원안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경우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은 현행과 같이 19%로 유지하려는 것임.

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3. 제2호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같은 호에 따른 전환일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42조(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② 법 제25조제5항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35) 김미애의원안 발의 당시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음.

[개정안별 세율 비교(일반 내국법인)]

과표구간	현행	김미애 의원안	김기표 의원안	안도걸 의원안	최은석 의원안	윤준병 의원안	정부안	윤종오 의원안
2억원 이하	9%	10%	9%	9%	8%	10%		9%
2~5억원	19%		19%	19%	18%	20%		20%
5~200억원		20%	21%	22%	20%	22%		22%
200~3,000억원	21%		25%	25%		25%		25%
3,000억원 초과	24%	22%						
과세표준 구간	4개	3개	4개	4개	3개	4개		4개

[개정안별 세율 비교(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과표구간	현행	김미애 의원안	김기표 의원안	안도걸 의원안	최은석 의원안	윤준병 의원안	정부안	윤종오 의원안
200억원 이하	19%	-	19%	19%	19%	20%		
200~3,000억원	21%		21%	22%	20%	22%		
3천억원 초과	24%		25%	25%		25%		
과세표준 구간	3개		3개	3개	2개	3개		

주: 김미애의원안 발의 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별도의 세율 규정이 없었음(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

가. 연혁

- 법인세 최고세율은 1998년 28%에서 2002년 27%, 2005년 25%, 2009년 22%로 인하되어 왔으며, 2012년부터는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이 신설되어 그 세율이 22%에서 20%로 인하되었음. 2018년부터는 3,000억원 초과 구간의 과세표준이 신설되어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인상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전 구간에서 세율이 △1%p 인하되어 최고세율이 24%로 인하되었음.

[법인세율 변경 현황]

과표구간	1998	2002	2005	2008	2009	2010	2012	2018	2023
1억원 이하	16%	15%	13%	11%	11%	10%	10%	10%	9%
1~2억원	28%	27%	25%				25%	22%	
2~200억원				20%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과세표준 구간	2개						3개	4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조세」 등 재구성

우리나라 법인세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이후 2015년까지 국세 중 법인세 비중은 축소되는 추세였으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다시 법인세 비중이 확대되어 2019년에는 그 비중이 24.6%에 달하였음.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비중이 19.4%로 감소하였다가 기업실적 회복과 함께 2022년 26.2%로 증가하였으나, 2023년에는 대내외적 경제 상황으로 기업 실적이 부진하여 23.4%로 다시

감소하였고,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로 인한 2023년 기업 영업이익의 하락 등으로 2024년에는 18.6%로 더욱 감소하였음.

[우리나라 법인세수 현황]

(단위: 조원, %)

연 도	국세(A)	법인세(B)	비중(B/A)
2012	203.0	45.9	22.6
2013	201.9	43.9	21.7
2014	205.5	42.7	20.8
2015	217.9	45.0	20.7
2016	242.6	52.1	21.5
2017	265.4	59.2	22.3
2018	293.6	70.9	24.1
2019	293.5	72.2	24.6
2020	285.5	55.5	19.4
2021	344.1	70.4	20.5
2022	395.9	103.6	26.2
2023	344.1	80.4	23.4
2024	336.5	62.5	18.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조세」 등 재구성

□ 한편, 최근 10년간의 법인세 실효세율 추이 및 2024년도 과표구간별 법인세 신고 현황은 다음과 같음.

[최근 10년간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평균 실효세율] (단위: %)

과세표준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16.1	16.6	17.2	17.6	19.1	17.5	18.1	18.5	17.8	16.7
2억원 이하	8.9	8.9	9.1	9.0	8.9	9.1	9.3	10.1	9.3	9.2
2~200억원	14.8	15.0	15.2	15.2	15.0	14.7	14.5	14.9	14.5	13.4
200~3,000억원	18.6	19.2	19.8	20.1	20.1	20.2	20.5	20.6	19.8	19.0
3,000억원 초과	16.5	17.4	18.4	18.7	22.5	19.6	21.3	20.5	20.0	20.4

주: 법인세 신고기준, 실효세율(%)=(총부담세액/과세표준)×100. 외국납부세액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국세청

[과표구간별 법인세 신고 현황(2024년)]

(단위: 개, %, 백만원)

구분		전체	2억원 이하	2~200억원	200~3,000억원	3,000억원초과
신고 법인수	전체	1,058,498	936,576	120,147	1,681	94
	(비중)	(100.00)	(88.48)	(11.35)	(0.16)	(0.01)
총 부담세액	전체	58,164,867	1,823,667	17,783,674	19,360,964	19,196,562
	(비중)	(100.00)	(3.14)	(30.57)	(33.29)	(33.00)
실효세율		16.7	9.2	13.4	19.0	20.4

주: 실효세율(%)=(총부담세액/과세표준)×100
자료: 국세통계포털

□ 법인세의 과세기반을 살펴보면 상위 소득금액 구간의 법인에 대한 세부담 집중도가 높은 것이 특징임. 2023년 기준으로 5,00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신고한 법인이 전체 법인수(103.1만개)의 0.01%(100개)를 차지하지만 과세표준의 34.0%를 차지하고 총부담세액의 38.0%를 차지하고 있음. 소득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수는 4,525개로 전체 법인 수의 0.4%인데, 과세표준의 70.6%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총부담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4%에 달하고 있음.

법인세 실효세율은 상위 소득금액 구간으로 갈수록 누진적으로 증가하는데, 소득금액 5,000억원 초과구간에서 실효세율이 소폭 감소하여 19.8%로 나타나고 있음.

[법인세의 소득금액별 과세기반 현황(2023년 신고 기준)]

구분	법인수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실효세율
	만개	%	누적 %	조원 (A)	%	누적 %	조원 (B)	%	누적 %	B/A, %
합계	1031	100	-	4521	100	-	81.6	100	-	17.8
0 이하	42.3	41.0	1000	0.0	0.0	1000	0.1	0.1	1000	-
0~1억원	37.5	36.4	59.0	8.8	1.9	1000	0.8	1.0	99.9	9.1
1~5억원	16.5	16.0	22.6	31.7	6.9	98.1	2.9	3.6	98.9	9.2
5~10억원	3.1	3.0	6.6	19.0	4.1	91.2	2.3	2.8	95.3	12.0
10~50억원	2.8	2.8	3.6	51.1	11.1	87.0	7.5	9.2	92.5	14.6
50~100억원	0.4	0.4	0.8	24.4	5.3	75.9	4.1	5.0	83.3	16.6
100~500억원	0.4	0.4	0.4	63.8	13.9	70.6	11.7	14.3	78.4	18.4
500~1,000억원	0.05	0.05	0.1	31.1	6.8	56.7	6.3	7.7	64.0	20.1
1,000~5,000억원	0.04	0.04	0.05	73.1	15.9	49.9	15.0	18.4	56.3	20.5
5,000억원 초과	0.01	0.01	0.01	1561	34.0	34.0	31.0	38.0	38.0	19.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조세」

□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23년 기준 3.9%로 G7 평균인 3.1%에 비해 0.8%p 높은 수준이며, OECD 평균인 3.7%와 비교하더라도 0.2%p 높은 수준임.

[OECD 주요국가의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중 비교]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한국		4.0	3.2	3.6	5.0	3.9
G7	일본	3.8	3.8	4.4	4.8	4.4
	캐나다	3.7	4.1	4.9	4.6	4.6
	영국	2.3	2.4	2.9	3.2	3.5
	프랑스	2.1	2.3	2.4	2.8	2.3
	독일	1.9	1.6	2.3	2.3	2.3
	이탈리아	1.9	2.0	1.9	2.8	2.7
	미국	1.3	1.4	1.7	2.0	2.1
	평균	2.4	2.5	2.9	3.2	3.1
OECD 평균		2.9	2.8	3.3	3.8	3.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우리나라의 법인세의 총조세 대비 비중은 2023년 기준 20.3%로 G7 평균 11.0% 및 OECD 평균 15.4%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임.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 국제비교]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한국	21.4	16.8	17.4	22.6	20.3
G7 평균	10.1	10.2	11.5	12.5	11.0
OECD 평균	12.7	12.0	13.6	15.6	15.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검토의견

- 상반된 입법취지를 가진 개정안에 대하여 ①법인세율 인상이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을 위한 적절한 정책수단인지 여부, ②법인세율과 투자·고용·경제성장 간 관계, ③법인세율의 적정 수준 및 국제적 추세, ④세수효과 등 주요 쟁점별로 찬반논거를 중심으로 비교·검토함.
- 첫째,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13.8조원), 2차 추가경정예산(31.8조원)에 이어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원으로 전년도 본예산(673.3조원) 대비 54.7조원(8.1%) 증가하였는데, 법인세율 인상이 이러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수단인지 여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함.

먼저 법인세율 인상에 찬성하거나 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은 국가정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세입기반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자체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법인세수는 2022년 103.6조원으로 전체 국세의 26.2%에 달하였으나 2023년에는 80.4조원(23.4%), 2024년에는 62.5조원(18.6%)으로 감소하여 최근 세입기반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고,

조세부담률³⁶⁾ 역시 2022년 22.1%에서 2023년 19.0%, 2024년 17.6%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일실을 방지하고 각 경제주체에게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조세부담을 부과할 필요하다는 입장임.

36) 명목GDP 대비 총조세 비중

[최근 5년간 법인세수 현황]

(단위: 조원, %)

연 도	국세(A)	법인세(B)	비중(B/A)
2020	285.5	55.5	19.4
2021	344.1	70.4	20.5
2022	395.9	103.6	26.2
2023	344.1	80.4	23.4
2024	336.5	62.5	18.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조세」 등 재구성

[명목 GDP 대비 총조세 비중(조세부담률) 추이]

(단위: %)

연 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조세부담률	18.8	18.8	18.8	20.6	22.1	19.0	17.6

자료: 기획재정부

반면,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거나 인하에 찬성하는 입장은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에 앞서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출 소요 발생에 따라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세율 자체의 인상보다 지출 구조조정 및 각종 비과세·세액감면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임.

국세감면액은 매년 증가하여 2024년에는 그 규모가 70조 5,171억원에 달하였고, 국세감면액을 국세수입총액으로 나눈 국세감면율은 16.1%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³⁷⁾, 3년 연속 법정한도³⁸⁾ 초과가 예상됨.

37) ('14.) 14.3% → ('15.) 14.1% → ('16.) 13.4% → ('17.) 13.0% → ('18.) 13.0% → ('19.) 13.9% → ('20.) 14.8% → ('21.) 13.5% → ('22.) 13.0% → ('23.) 15.8% → ('24.) 16.1%

38) 「국가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감면율을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의 평균값에 0.5%를 더한 비율 이하로 관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법정한도 준수를 위해 국세감면율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국세수입 총액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세감면액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임.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 및 전망(2019~2026)]

(단위: 억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망)	2026년 (전망)
국세감면액(A)	495,700	529,357	570,248	635,484	697,664	705,171	764,719	805,277
국세수입총액(B)	3,066,963	3,036,717	3,639,730	4,229,237	3,703,803	3,656,829	4,003,076	4,195,673
국세감면율 [A/(A+B)]	13.9	14.8	13.5	13.0	15.8	16.1	16.0	16.1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3.3	13.6	14.3	14.6	14.3	14.6	15.5	16.5

* 국세수입총액: 국세수납액에 지방소비세액을 포함한 금액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산술평균 + 0.5%p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국가재정법」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① 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이란 법 제61조에 따라 정부가 작성한 결산 중 국세수납액(결산을 작성하기 전 회계연도의 경우에는 법 제33조의 예산안 중 국세 세입예산액)과 「부가가치세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88조제1항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의 국세감면액을 말한다.

③ 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것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1천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또한, 일몰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조세특례 제도의 연장비율이 최근 7년간 86.7%에 달하여 관행적인 적용기한 연장 문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 정비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³⁹⁾

[일몰기한 도래 조세지출 연장 현황(항목)]

(단위: 건, %)

연도	일몰도래(A)	연장(B)	종료	연장 비율(B/A)
2019년	34	27	7	79.4%
2020년	54	44	10	81.5%
2021년	86	77	9	89.5%
2022년	74	64	10	86.5%
2023년	71	65	6	91.5%
2024년	29	22	7	75.9%
2025년 (정부제출안)	72	65	7	90.3%
최근 7년 평균	60	52	8	86.7%

주: 연장: 단순한 기한 연장 및 제도를 재설계하면서 일몰기한도 연장한 경우를 모두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일몰기한 도래 조세지출 연장 현황(금액)]

(단위: 억원, %)

연도	조세지출(A)	일몰도래(B)	연장(C)	종료(D)	연장 비율(CB)
2019년	495,700	35,630	35,432	198	99.4
2020년	529,357	83,598	65,741	17,8571)	78.6
2021년	570,248	62,105	61,844	261	99.5
2022년	635,484	108,868	108,043	825	99.2
2023년	697,664	31,731	31,677	54	99.8
2024년	705,171	15,812	15,630	182	98.8
2025년(전망) ²⁾	764,719	177,690	172,129	5,561	96.9

주1: 코로나19관련 지원으로 '20년 한시적 도입된 조특법 §99의11, §108의4, §108의5, §109의4의 감면액 17,127억원을 포함(코로나19지원 조항 제외 시 일몰 연장비율은 98.9%)

주2: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상 2025년 전망액 기준

39) 국회입법조사처, '조세특례 일몰제도 개선방안: 관행적 일몰 연장에서 벗어나 실효적 일몰제도 정착 필요', 2023. 12. 8.

□ 둘째, 법인세율과 투자·고용·경제성장 간 관계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먼저 법인세율 인상에 찬성하거나 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은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이 투자를 늘려 경제가 성장한다는 주장에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고 실증적인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임.

한국신용정보평가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의 세부담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세부담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음(-)의 값을 나타내기는 했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낮았음.⁴⁰⁾

미국에서의 감세정책은 기대했던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반면,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의 급증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켰고 감세정책의 혜택이 부유층에 집중됨으로 인해 분배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드는 부작용도 있었음.⁴¹⁾

법인세율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한다는 입장과 양자간 상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양립하는 상황임.⁴²⁾

반면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거나 인하에 찬성하는 입장은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을 제시함.

40) 김우철,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5.

41) 이준구, 「재정학」 6판, p.652.

42) 국회예산정책처,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 2024. 6.

기획재정부는 2022년 보도자료를 통해 다양한 실증 연구에서 법인세율 인하는 투자·고용 증가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고 미국 등 외국 사례에서도 기업 투자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함.⁴³⁾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7년 조세재정연구원은 법인세율 3%p 인상시 투자 $\Delta 0.7\%$, 고용 $\Delta 0.2\%$, GDP $\Delta 0.3\%$ 감소를 유발한다고 발표하였으며, '22.4월 OECD 통계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 전후 2년 평균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미국('18년)과 프랑스('16년)에서 유의미한 증가 현상이 나타났음.

또한, 국내 상장기업의 재무상태, 수익성 및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통제한 후 분석한 결과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이 1%p 인하될 때 투자율은 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가 있음.⁴⁴⁾

4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 7. 22.

44) 남창우,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KDI 정책포럼 제264호, KDI, 2016.11. p.6.

□ 셋째, 법인세율의 적정 수준 및 국제적 추세에 대한 견해차가 존재함.⁴⁵⁾

먼저 법인세율 인상에 찬성하거나 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은 법인세율 인하는 국제적인 추세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 및 실제 부담세액이 높은 편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함.⁴⁶⁾

기획재정부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종식 이후 자국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과 재정여건에 맞추어 조세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추세가 강화되었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들이 존재한다는 입장임.⁴⁷⁾

영국은 2017년 법인세율을 20%에서 19%로 인하하였으나 2023년에 25%로 인상하였고, 프랑스 역시 최고세율을 2018년 33.33%에서 2022년 25%까지 지속적으로 인하하였으나 2025년 대기업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법인세율을 인상하였음. 이 외에도 2025년 튀르키예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30%로 5%p 인상하였고, 에스토니아는 20%에서 22%로 2%p 인상한 바 있음.⁴⁸⁾

또한, 최고세율 기준(지방세 포함, 2024년 기준)으로는 OECD 국가 중 G20 국가(27.4%) 대비 현행 세율(26.4%)이 낮고, 2023년 기준

45) 다만, 우리나라는 4단계 누진 법인세율 체계를 채택하고 있어 최고세율에 따른 국제적 비교 실효성은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46)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p. 49, 2025. 7. 31.

47)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 역시 지난 20년간 법인세율은 감소 추세였으나, 2023년에 그 추세가 멈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The downward trend in statutory CIT tax rates seems to have halted with far more jurisdictions implementing rate increases than decreases in 2023,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first edition of the Tax Policy Reforms report. The CIT rate increases observed were of significant magnitude. (2024 OECD Tax Policy Reforms)

48)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조세”, p. 242, 2025. 4.

조세부담률(19.0%) 역시 G7(24.5%) 및 OECD 평균(25.4%)에 비해 낮음.

[경제규모별 법인세 최고세율('24년 기준) 비교]

구 분		국 가		법인세율	
				지방세 제외	지방세 포함
OECD 중 G20 (11개국)	OECD 중 30-50 (7개국)	대한민국	현행	24.0	26.4
			정부안	25.0	27.5
		프 랑 스		25.0	25.8
		독 일		15.0	30.1
		이탈리아		24.0	27.8
		일 본		23.2	29.7
		영 국		25.0	25.0
		미 국		21.0	25.6
		호 주		30.0	30.0
		맥 시 코		30.0	30.0
		튀르키예		25.0	25.0
		캐 나 다		15.0	26.0
평균	OECD 중 30-50			22.5	27.2
	OECD 중 G20			23.4	27.4
	OECD 평균			-	23.9
	G7 평균			-	27.2

주1: 프랑스는 '25년 대기업에 한해 한시적('25년) 법인세율 인상

(기본 법인세율 25%, 매출액 10억유로 이상 +5.2%p, 30억유로 이상 +10.3%p)

주2: OECD 30-50 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인 국가

G20은 다자간 금융협력을 목적으로 1999년에 전세계 선진·신흥 20개국이 결성한 협의체

*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명목 GDP 대비 총조세 비중(조세부담률) 비교]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대한민국	18.8	18.8	20.6	22.1	19.0
G7 평균	24.0	24.2	24.9	25.1	24.5
OECD 평균	24.9	24.8	25.5	25.6	25.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조세」

반면,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거나 인하에 찬성하는 입장은 국제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큰 흐름이므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주요국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임.

일본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기준)은 2011년 39.5%에서 2018년에 29.7%로 인하되었고, 미국은 2018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연방정부 기준)을 35%에서 21%로 14%p 인하하였지만,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법인세 최고세율(국세 기준)을 2018년 22%에서 25%로 인상하였다가 2023년에서야 24%로 낮추어 주요국의 법인세율 인하 추세에 뒤늦게 합류하였다는 것임.

또한, 여전히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은 26.4%로 OECD 평균인 23.9% 대비 높고,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중(3.9%) 및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20.3%) 역시 G7 평균(3.1%, 11.0%)과 OECD 평균(3.7%, 15.4%)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최근 10년간(2014년~2024년) 법인세 최고세율 변화를 보면, 우리나라는 24.2%에서 26.4%로 2.2%p 상향된 반면, G7평균은 31.4%에서 27.1%로 4.3%p 하락하였음.

아울러 최근 미국과의 통상 불확실성 증대, 관세 인상 등에 따라 각국에서 앞다투어 자국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 중인 시점에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세율 인상은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것임.

[OECD 주요국가의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중 비교]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한국	4.0	3.2	3.6	5.0	3.9
G7	일본	3.8	4.4	4.8	4.4
	캐나다	3.7	4.1	4.9	4.6
	영국	2.3	2.4	2.9	3.2
	프랑스	2.1	2.3	2.4	2.8
	독일	1.9	1.6	2.3	2.3
	이탈리아	1.9	2.0	1.9	2.8
	미국	1.3	1.4	1.7	2.0
	평균	2.4	2.5	2.9	3.1
OECD 평균	2.9	2.8	3.3	3.8	3.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 국제비교]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한국	21.4	16.8	17.4	22.6	20.3
G7 평균	10.1	10.2	11.5	12.5	11.0
OECD 평균	12.7	12.0	13.6	15.6	15.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법인세 최고세율 현황(지방세 포함): 국제비교]

(단위: %, %p)

구분	2014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차이 (‘24-’14)
대한민국	24.2	27.5	27.5	27.5	27.5	26.4	26.4	2.2
캐나다	26.2	26.6	26.3	26.2	26.1	26.1	26.1	△0.1
프랑스	38.0	34.4	32.0	28.4	25.8	25.8	25.8	△12.2
독일	29.7	29.9	29.8	29.9	29.9	29.9	29.9	0.2
이탈리아	31.3	27.8	27.8	27.8	27.8	27.8	27.8	△3.5
일본	34.6	29.7	29.7	29.7	29.7	29.7	29.7	△4.9
영국	21.0	19.0	19.0	19.0	19.0	25.0	25.0	2.0
미국	39.1	25.9	25.8	25.8	25.8	25.8	25.6	△13.4
G7 평균	31.4	27.6	27.2	26.7	26.3	27.2	27.1	△4.3

주: 전체 OECD 국가의 법인세 최고세율 현황은 [부록] OECD 주요 조세통계 참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조세」

□ 넷째, 법인세율 조정에 따른 세수변화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대립하고 있음.

먼저 법인세율 인상에 찬성하거나 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은 현재 회복과 성장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인상하지 않을 경우 부채 보전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2024년 기준 법인세는 국세수입의 18.6%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세원인데,⁴⁹⁾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 및 양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의 구조적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법인세율 인하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⁵⁰⁾

반면,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거나 인하에 찬성하는 입장은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감소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임.

법인세 최고세율이 3%p 인하될 경우 2023년에 40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0.6% 수준인 2.4조원 정도의 추가 세수가 경제 성장에 따라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장기적으로 세수규모가 연간 13조원 수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음.⁵¹⁾

49) 2022년 26.2% → 2023년 23.4% → 2024년 18.6%

50) 입법조사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V」, p. 383, 2024. 8.

51) 김학수,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KDI FOCUS, 2022.10.4. p10.

□ 한편, 김미애의원안과 최은석의원안은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법인세율 단순화는 과세체계의 복잡성 및 비효율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수 국가들은 단일세율로 법인세를 과세하며, 특정 정책목적을 위해서 매출액, 과세표준, 기업의 법적 규모, 주주의 구성 등 여러 기준을 혼합하여 설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감세율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OECD 38개 회원국 중 다수의 국가가 1개(24개국) 또는 2개(10개국)의 과세표준 구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3개 이상의 과세표준 구간을 채택한 국가는 우리나라(4개)를 비롯하여 룩셈부르크, 영국(3개)과 코스타리카(5개)뿐임.

[OECD 국가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수]

과표구간수	해당 국가	
1개	24개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튀르키예, 미국
2개	10개국	호주, 벨기에, 칠레, 프랑스, 일본,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3개	2개국	룩셈부르크, 영국
4개	1개국	대한민국
5개	1개국	코스타리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조세」

법인세의 과표구간을 세분화하는 누진세 체계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으나⁵²⁾, 과세체계의 복잡성 및 비효율성이 커지는 문제도 상존함.

다단계 누진세율은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고, 높은 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인위적인 분할 등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음.

IMF는 ‘2017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에서 우리나라 법인세에 대해 과표구간 단일화로 왜곡을 없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권고하였음.⁵³⁾

다만, 김미애의원안은 하위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9%에서 10%로 인상하려는 것인데,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3억원 이상’ 과세표준 구간에 속하는 법인의 산출세액은 감소하는 한편, ‘3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에 속하는 법인의 산출세액은 증가하여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남.

[김미애의원안 관련 전체 산출세액 변화(귀속연도 기준)]

(단위: 억원)

과세표준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3억원 이하	2,468	2,632	2,779	2,928	3,077
3억원 ~ 5억원 이하	△9,580	△10,216	△10,788	△11,369	△11,946
5억원 ~ 200억원 이하	△2,520	△2,687	△2,837	△2,990	△3,142
200억원 ~ 3,000억원 이하	△7,396	△7,888	△8,329	△8,777	△9,223
3,000억원 초과	△38,158	△40,692	△42,970	△45,283	△47,58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2)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 2018. 8.

53) IMF는 2018년 2월 한국보고서에서 과세표준 구간의 단순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세수 확보를 권고한 바 있음. “Significant efficiency and revenue gains could come from addressing multiple distortions in corporate income taxation, including by reducing the number of corporate income tax rates to one.”

또한, 최은석의원안은 최상위 과세표준 구간인 3,0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4%p 인하하는 효과를 유발하게 되는데, 해당 과표구간이 총 부담세액의 33%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폭의 세수감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⁵⁴⁾

- 따라서 법인세율 및 과표구간의 조정은 앞서 살펴본 최근의 경제 상황, 해외 동향, 세수효과 등과 더불어, 법인세 외 다른 세목(稅目)의 개정 및 각종 조세특례의 신설·개편·일몰 등에 따른 실효세율, 세부담 및 조세지출 변동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54) 2024년 기준 총 부담세액 58조원 중 19조원(33%)

5.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에 따른 미제출 가산세 시행시기 유예(정부안)

현 행	개정안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법률 제19193호 (2026.1.1. 시행) 제75조의7 및 부칙 제1조제4호, 제 11조제2항 및 제4항)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 출 가산세 - 기한 내 미제출 시 : 0.25% - 기한 후 1개월 내 제출: 0.125% ☐ 시행일 : <u>2026. 1. 1.</u>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 출 가산세 - 기한 내 미제출 시: (현행과 같음) - 기한 후 1개월 내 제출: (현행과 같음) ☐ 시행일: <u>2027. 1. 1.</u>

* 정부안 2025. 9. 3. 제출 (의안번호 12656)

☐ 개정안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간
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를 2026년 1월 1일에서 2027년 1
월 1일로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
안번호 12655호)의 의결을 전제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시기를
2026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1년 유예하려는 것임.

☐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
지급액 및 원천징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기록한 “지급명세서”를
매년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은 이러한
지급명세서를 제출받아 소득을 파악하고 과세에 활용하고 있음.

한편, 총급여액이 일정 수준 미만인 가구에 대해 지급되는 근로장
려금⁵⁵⁾이 2019년부터 종전의 연 1회가 아닌 연 2회로 나누어 지

55) 일정 소득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에 대해 총급여액 및 가구원 구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
(최대3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임(「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등)

급⁵⁶⁾되기 시작하면서 근로장려금 지급의 전제로서 연 2회 소득정보 확인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해 “간이지급명세서”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도입 당시에는 이를 “상용근로소득”(일용근로자⁵⁷⁾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 이하 같음)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매 반기(연 2회)마다 제출하도록 하였음.

이후 2020년 발표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⁵⁸⁾에 따라,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추진되면서, 방문판매원 등 일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기 위해⁵⁹⁾ 월 단위 소득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2021년 3월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하여금 기존에 매 반기 제출하도록 했던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이

56) 예를 들어 기존에 많은 소득이 있다가 해당연도 상반기에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 기존 연 1회 지급 시에는 다음 해 9월이 되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연 2회 지급 시에는 상반기 저소득 정보가 곧바로 파악되어 당해 연도 하반기(통상 12월)에 바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57) 세법상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등을 의미함.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58) 특수형태근로자, 플랫폼근로자 등 기존에 고용보험 제도에서 제외되어 있던 사람들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에 대해 소득정보 기반으로 사각지대 없이 고용보험을 적용하려는 것임(「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고용노동부, 2020. 12.)

59)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대부분 고정된 소득을 얻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료 산정 및 보험금 지급조건 충족 여부 판단 등을 위해 매월의 소득 파악이 필요함.

에 따른 법인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 증가를 감안하여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인세법」을 개정하였음.

2022년 정기회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024년 1월 1일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하는 대상을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까지로 확대하였고,

2023년 정기회에서는 상용 근로소득자에 대해 월별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기본 전제인 ‘소득기반 고용보험 제도’의 시행이 지연됨에 따라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의무 및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의 시행시기를 2026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하였음.

[소득종류 별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구분	소득종류	대표 직종	제출의무	소득과락주기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소득	건설일용직	지급명세서	매월
상용근로자	상용근로소득	사무직원	지급명세서	매년
			<u>간이지급명세서</u>	<u>매월(2026.1.1.시행)</u>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지급명세서	매년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인적용역관련 기타소득	일회성강연자 임시판매원	지급명세서	매년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그 밖의 소득	-	지급명세서	매년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12655호)」은 정부

가 당초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소득기반 고용보험 제도”의 시행이 지연됨에 따라 해당 제도를 수행하기 위한 전제로 선행하여 도입했던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의무”의 시행시기를 현행 2026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하려는 것이고,

본 개정안은 이를 전제로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도의 시행시기를 2026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연기하려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의 개정 경과에 맞추어 시행시기 연기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6. 연결납세제도 보완 등

가. 연결납세제도 개요

□ 연결납세제도는 모법인·자법인이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법인·자법인을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서, 조직형태(사업부 또는 자회사)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임.⁶⁰⁾

종전 우리나라는 법인단위로 과세하는 개별납세방식만 시행하였으나, 개별납세방식은 기업조직을 사업부제와 자회사 중 어떤 형태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조세부담이 달라지는 문제가 존재하였음. 가령, 사업부제의 경우에는 사업부에서 발생하는 결손이 다른 사업부의 소득과 통산되지만, 사업부 등을 분사 또는 자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자회사 등의 결손이 통산되지 않고 흑자법인에 대해서만 과세되어 사업부제에 비해 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기업의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함으로써 기업의 조직구성에 관한 조세의 중립성⁶¹⁾을 보장하고, 기업이 경영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08년 세법개정 시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어 2010년부터 시행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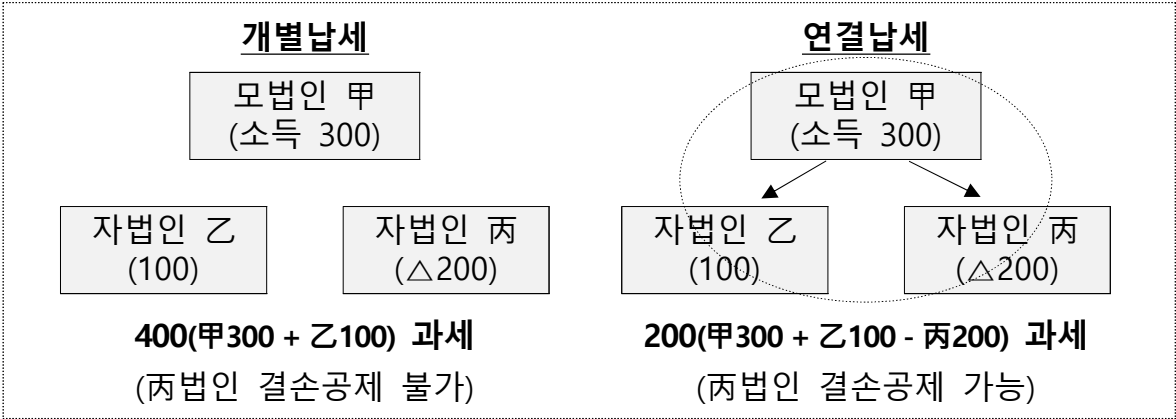
연결납세제도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므로 연결집단의

60)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논의 및 과제」, 2022. 12.

61) 조세의 중립성은 동일한 경제적 실질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부담이 되도록 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개념임.

모든 개별 법인이 각각 개별납세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이 감소할 수 있는 한편, 연결집단의 소득 합산으로 과표구간이 변경되면 누진세율 구조로 인해 세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음.

[개별납세와 연결납세 비교]



2008년 연결납세제도 도입 시 자법인에 대한 모법인의 지분율이 100%인 경우에만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후 연결납세제도의 활용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지분율 90% 이상인 경우에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음.

또한, 연결자법인의 개별귀속세액이 0보다 작은 경우 연결모법인으로 하여금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해당 연결자법인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연결지분율을 완화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연결소득의 배분 방법을 보완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한편,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계산 시 연결집단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하도록 하고, 연결집단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연결법인에 대해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도 보완이 이루어졌음.

나. 연결납세제도 보완(정부안)

현 행	개정안
□ 연결납세방식의 취소(제76조의9) ○ 취소사유 -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불일치 - 연결모법인이 연결지배하지 않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 적용 - 장부 등에 의하여 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불가 - 수시부과사유 존재 -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연결지배를 받는 경우 ○ 연결납세방식 승인 후 5년 이내 취소 시 사후관리 - 연결사업연도 동안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익금 산입 - 연결사업연도 동안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 손금 산입	□ 익금 및 손금 산입 대상에서 결손금대가 지급분 제외 ○ 취소사유: (현행과 같음) ○ 연결납세방식 승인 후 5년 이내 취소 시 사후관리 - 연결사업연도 동안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익금 산입(단, <u>결손금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익금 산입 제외</u>) - 연결사업연도 동안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 손금 산입(단, <u>결손금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손금산입 제외</u>)
□ 연결자법인의 배제(제76조의12) ○ 배제사유 -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연결자법인의 해산 ○ 연결납세방식 승인 후 5년 이내 배제 시 사후관리	□ 익금 및 손금 산입 대상에서 결손금대가 지급분 제외 ○ 취소사유: (현행과 같음) ○ 연결납세방식 승인 후 5년 이내 배제 시 사후관리

현행	개정안
- 연결사업연도 동안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의 소득금액: 익금 산입 - 연결사업연도 동안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 손금 산입 - 연결사업연도 동안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익금 산입 - 연결사업연도 동안 연결배제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 손금 산입 □ 연결과세표준(제76조의13) ○ 연결과세표준 계산 방식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차례로 공제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 발생한 결손금: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 <u>연결모법인</u>이 적격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양도받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u>연결법인의</u>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u>연결모법인</u>이 적격분할합병에 따라 소	- 연결사업연도 동안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의 소득금액: 익금 산입(<u>단, 결손금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익금 산입 제외</u>) - 연결사업연도 동안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 손금 산입(<u>단, 결손금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손금 산입 제외</u>) - 연결사업연도 동안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익금 산입(<u>단, 결손금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익금 산입 제외</u>) - 연결사업연도 동안 연결배제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 손금 산입(<u>단, 결손금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손금 산입 제외</u>) □ 연결자법인의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합병 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 연결과세표준 계산 방식: (현행과 같음)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현행과 같음) - <u>연결법인</u>이 적격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양도받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u>연결법인의</u>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u>연결법인</u>이 적격분할합병에 따라 소

현행	개정안
소멸한 분할법인의 자산을 양도받는 경우 소멸한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 중 <u>연결모법인</u>이 승계받은 사업에 귀속하는 금액: <u>연결모법인</u>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중 소멸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제76조의 14)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계산 방식 -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결손금 계산 -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 제거 -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 조정 - 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 처분손실 - 처리방식: 손금산입한도까지 해당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고, 한도 초과액은 이월결손금으로 보아 이후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 - <u>연결모법인</u>의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합병 시 5년 이내에 발생한 자산 처분손실 손금산입한도 ① 기존연결법인(합병 전 <u>연결모법인</u> 및 <u>연결자법인</u>)의 자산처분 손실: <u>연결모법인</u>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중 합병 전 <u>연결모법인</u>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u>연결자법인</u>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멸한 분할법인의 자산을 양도받는 경우 소멸한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 중 <u>연결법인</u>이 승계받은 사업에 귀속하는 금액: <u>연결법인의</u>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중 소멸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연결자법인의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합병 시 자산처분 손실 손금한도 적용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계산 방식: (현행과 같음) ○ 처분손실 - 처리방식: (현행과 같음) - <u>연결법인의</u>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합병 시 5년 이내에 발생한 자산 처분손실 손금산입한도 ① 기존연결법인(합병 전 <u>연결법인</u>)의 자산처분 손실: <u>연결법인의</u>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중 합병 전 <u>해당 연결법인의</u>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u>해당 연결법인</u> 외의 기존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현행	개정안
②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중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제76조의19) ○ 납부주체: 연결모법인 ○ 납부방식: 연결자법인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해당 법인의 감면세액 및 중간예납세액을 뺀 금액에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연결모법인에 지급 ☐ 연결법인의 가산세(제76조의21) ○ 납부주체: 연결모법인 ○ 납부대상 가산세: 각 연결법인별로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구분경리(제113조) ○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②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 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중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추가 ○ 납부주체: (현행과 같음) ○ 납부방식: 연결자법인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해당 법인의 감면세액 및 중간예납세액을 뺀 금액에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연결모법인에 지급 * 제74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연결모법인 납부 대상 가산세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추가 ○ 납부주체: (현행과 같음) ○ 납부대상 가산세: 각 연결법인별로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제74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연결자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와 동일한 구분경리의무 부과 ○ 연결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현행	개정안
- 방식: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법법인 또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 - 기간: ①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합병에 따라 피합법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②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 방식: (현행과 같음) - 기간: (현행과 같음)

*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6)

☐ 개정안은 연결납세 취소·배제 시 결손금 사후관리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가산세 규정을 정비하며, 연결자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등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1) 연결납세 취소·배제 시 결손금 사후관리 예외 규정 신설

☐ 개정안은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 후 5년 이내에 승인이 취소되거나 연결자법인이 배제된 경우, 기공제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결손금에 대해서 이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은 익금에서 제외하고 다른 연결법인이 공제받은 결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때 그 결손금의 대가를 지급받은 금액은 손금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연결납세방식 취소 및 연결자법인 배제에 따른 사후관리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먼저 본 개정안과 관련한 연결납세제도의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2015년 세법개정 당시 연결납세방식의 의무적용 기한인 5년을 준수하지 못한 연결납세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결납세방식 승인 후 5년 이내 승인이 취소되거나 연결자법인이 배제된 경우 공제받은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환원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음(제76조의9제2항 및 제76조의12제2항).⁶²⁾

이후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연결납세방식의 요건을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90%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10% 이하 지분의 결손법인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연결자법인의 개별귀속세액이 0보다 작은 경우 연결모법인은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해당 연결자법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음(제76조의19제3항).⁶³⁾

62) 「법인세법」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②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각 연결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금액이나 결손금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익금에 산입
2.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 손금에 산입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②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개별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득금액: 연결배제법인의 익금에 산입
2.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 연결배제법인의 손금에 산입
3.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
4.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연결배제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 해당 법인의 손금에 산입

63) 「법인세법」

이는 결손법인의 소수주주는 결손금 통산에 따라 미래 법인세 부담액 증가 및 기업가치 하락 등의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결손법인의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조치로서 도입된 것임.

그런데 연결집단 전체의 소득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전된 결손금에 대한 세액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23년 「법인세법」 개정 및 2024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결손금을 배분받은 연결자법인은 정산금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결손금을 지급한 연결자법인은 연결모법인으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등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 정산금 배분 규정을 신설하였음(제76조의19제5항).⁶⁴⁾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② 연결자법인은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감면세액
 2.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
 3.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
- ③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의 수인 경우 연결모법인은 음의 부호를 뺀 금액을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자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64) 「법인세법」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⑤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을 정산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정산금”이라 한다)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법인별로 배분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자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연결자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모법인에 지급
 - 가. 연결자법인의 해당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이 합하여진 경우
 - 나.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다른 연결법인의 제76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공제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자법인이 있는 경우: 연결모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해당 연결자법인에 지급
 - 가. 연결자법인의 해당 연결사업연도 결손금이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에 합하여진 경우
 - 나. 연결자법인의 제76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다른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된 경우

이는 연결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연결집단의 세액이 0이 되더라도 연결집단 내에서 이전된 결손금이 있는 경우 연결법인별 연결세액은 배분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개정안은 2022년과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결손금 통산에 따라 미래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 결손법인에 대한 정산금 등의 대가를 지급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연결납세방식 취소 또는 연결자법인 배제에 따라 공제받은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환원할 때 그 결손금의 대가를 이미 지급한 분은 제외하려는 것으로 이중 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 이전에 따라 세부담 감면을 받은 연결법인은 결손금 이전에 따른 정산금 등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추후 연결납세방식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경우 이중 부담의 소지가 있고, 마찬가지로 결손법인으로서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결손금 이전에 따른 정산금 등을 이미 지급받았다면 연결납세방식 취소 또는 연결자법인 배제 이후 해당 결손금을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2) 연결법인 가산세 규정 정비

- 개정안은 연결모법인이 납부하는 가산세 항목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76조의19제2항⁶⁵⁾은 연결자법인으로 하여금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해당 법인의 감면세액,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에 법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제76조의21⁶⁶⁾은 연결모법인으로 하여금 각 연결법인별로 납부해야 하는 가산세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 제76조의19 및 제76조의21에 따라 연결자법인 및 연결모법인이 지급·납부해야 하는 가산세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75조),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2),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작

65) 「법인세법」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①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76조의17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세액공제액
 2. 제76조의18에 따른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예납세액
 3.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각 연결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
- ② 연결자법인은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감면세액
2.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
3.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

66) 「법인세법」

제76조의21(연결법인의 가산세)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성·보관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4),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5),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6),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7),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8),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9)임.

한편, 2021년 세법개정에 따라 신설된 현행법 제74조의2⁶⁷⁾에 따르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산입액의 1%를,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손금산입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의 가산세를 부과함.

□ 개정안은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여야 하는 가산세와 연결모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가산세에 2021년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임.

□ 다만, 현행법 제97조⁶⁸⁾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국내원천 부

67) 「법인세법」

제74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
2.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68) 「법인세법」

제97조(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대

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대한 준용규정에 해당하는데, 가산세의 경우 제74조의2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누락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추가개정이 필요해 보이고, 기획재정부도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3) 연결자법인 규정 보완

□ 개정안은 연결자법인이 적격합병하거나 적격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도 연결모법인이 적격합병하거나 적격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및 자산처분 손실 손금산입 한도를 적용받도록 하는 한편,

연결자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일정 기간 자산, 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를 준용할 때 외국법인등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1.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경우: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 제58조의3 및 제59조
2. 신고와 납부의 경우: 제60조(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는 제외한다), 제62조 및 제64조
3. 중간예납의 경우: 제63조 및 제63조의2
4. 과세표준의 결정과 경정의 경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5. 세액의 징수와 환급의 경우: 제71조
6. 원천징수의 경우: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4조
7. 가산세의 경우: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

② ~ ⑤ (생략)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76조의13⁶⁹⁾ 및 제76조의14⁷⁰⁾는 연결모법인이 적격합병

69) 「법인세법」

제76조의13(연결과세표준)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각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연결사업연도(사업연도를 포함한다)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의 합계액

3.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 연결법인의 소득공제액의 합계액

② 제1항제1호에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이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이 0보다 적은 경우 해당 금액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과 제76조의1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처분손실을 말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손금은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1. 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중 해당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이라 한다)

2. **연결모법인이 적격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양도받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만 해당한다)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연결모법인이 적격분할합병에 따라 소멸한 분할법인의 자산을 양도받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소멸한 분할법인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 중 연결모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 귀속하는 금액: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중 소멸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④ 제1항에 따른 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의 공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0) 「법인세법」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제14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결손금을 계산

2.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의 제거

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정: 제18조의2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

나.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 및 기업업무추진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3.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가. 수입배당금액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불산입

나. 기업업무추진비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기업업무추진비 상당액을 손금에 불산입

다. 대손충당금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불산입

라. 자산양도손익의 조정: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른 연결법

또는 적격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와 자산처분손실의 손금산입한도를 규정하고 있음.

제76조의13제3항에 따르면 연결모법인이 적격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양도받는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한도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고, 연결모법인이 적격분할합병에 따라 소멸한 분할법인의 자산을 양도받는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중 소멸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4. 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2,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손실은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결손금으로 보고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이후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연결가능자법인이 된(설립등기일부터 연결가능자법인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기 전 취득한 자산으로 한정한다)의 처분손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귀속액을 말하되,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의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나. 연결자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의 경우 해당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2.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으로 한정한다)을 **적격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여 **적격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합병 전 연결모법인 및 연결자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연결법인**”이라 한다)과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합병 전 각각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차액을 한도로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하되,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기존연결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의 경우 기존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중 합병 전 연결모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을 말한다)

나.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의 경우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2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계산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한도로 소멸한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 중 연결모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 귀속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음.

제76조의14제2항제2호는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적격합병하거나 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여 적격분할합병할 때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합병 전 연결모법인 및 연결자법인과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합병 전 각각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의 손금산입한도를 규정하고 있음.

기존연결법인(연결모법인 및 연결자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의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중 합병 전 연결모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을 한도로 손금 산입이 가능하고,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은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한도로 함.

또한 제113조제5항71)에 따르면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거나 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는 분할합

71)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⑤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76조의13제3항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병을 하는 경우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법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 제76조의13제3항, 제76조의14제2항 및 제113조제5항은 연결모법인이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자산처분손실 손금산입한도 및 구분경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연결자법인이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불비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에 해당함.

문 의 처
02)6788-5154

7.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식 합리화(정부안)

현행	개정안
□ 익금의 범위 (§15) ○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 ○ 익금으로 보는 금액 - 특수관계인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 상당 금액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 등에 대응하는 외국법인세액 - <신설> □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57의2) ○ 대상 -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등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등 -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 재산 ○ 요건 - <u>대상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일 것</u> ○ 공제 금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과세표준 한계세율을 고려한 비율을 곱한 금액 ○ 공제한도 - $A \times \frac{B}{C}$ A: 산출세액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추가 ○ (현행과 같음)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추가 - <u>세액공제 대상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u> □ 공제한도금액 계산 방식 변경 ○ (현행과 같음) ○ 요건의 변경 - <u>대상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취득하였을 것</u> ○ (현행과 같음) 공제한도 계산식의 변경 - $A \times \frac{B}{C}$ A: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안
B: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소득에 한정	B: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세액공제 대상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소득에 한정하지 않음
C: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이월공제 - 공제한도금액 초과분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적용	C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현행과 같음)

*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6)

□ 개정안은 익금의 범위에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⁷²⁾을 추가하고, 간접투자회사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투자회사등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취득’한 경우로 규정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을 지급받은 소득에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익금에 가산(gross-up)하고 배분 시점에 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며, 간접투자회사등이 실제 지급한 소득을 기준으로 한도 계산을 가능하게 하여 그 적용방식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57조의2⁷³⁾는 간접투자회사등⁷⁴⁾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72) 간접투자회사등이 금융상품의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

73) 「법인세법」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 세액공제 특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이 중 간접투자회사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개념 및 설립형태에 따라 크게 투자회사와 투자신탁으로 구분할 수 있음.

펀드⁷⁵⁾ 과세체계를 살펴보면, 펀드-투자자 간 이중과세 해소를 위하여 펀드를 납세주체에서 제외함으로써 펀드 단계에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투자자 단계에서 과세를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득금액이 펀드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소득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⁷⁶⁾하여 펀드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있음.

한편, 투자자 단계에서 과세 시 「소득세법」⁷⁷⁾에 따라 일정 요건을

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2. 간접투자회사등이 내국법인에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제5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로서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같은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을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과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세후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된 간접투자회사등의 증권의 매도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7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법인세법」에 따른 신탁재산

75) 일반적으로 ‘펀드’로 불리며, 펀드와 집합투자기구는 동일한 것으로 봄

76) 「소득세법」

제155조의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77)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갖춘 펀드로부터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투자회사와 투자신탁의 비교]

구 분	투자회사(회사형 펀드)	투자신탁(신탁형 펀드)
설립 형태	주식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예정된 판매 회사에 의하여 발기 설립되어 모 집)	신탁계약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간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생성)
발행 증권	주권(주식)	수익증권
투자자 지위	주주	수익자
구조적 감시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감독이사가 감시	신탁업자가 운용행위를 감시
설립 절차	사전에 주식회사를 설립한 이후 모집	일반적으로 자금 모집 후 감독기관 신고
설립 비용	설립관련 상법에 준하는 등기업무 및 법인설립과 관련한 등록세 등 부담	설립과 관련된 비용이 소요되지 않 음
펀드 과세 체계	펀드가 배당가능 이익을 90% 이상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경우 배 당 소득금액 공제를 적용하여 과 세 면제 (「법인세법」 제51조의2)	투자신탁을 별도 납세의무를 부 담하는 납세 주체에서 제외(도관 취급)하여 과세 면제
소득에 대한 세제	소득구분은 배당소득 <u>소득자가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 없</u> <u>음</u>	소득구분은 배당소득 <u>소득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원천징</u> <u>수</u> <u>(단, 금융회사의 경우 제외)78)</u> 연 1회 결산 및 원천징수 의무

자료: 2025 금융상품과 세금, 김용빈 외 2인, p.368

□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7조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78)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의 금액

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국제적 이중과세를 제거할 수 있으나, 펀드를 통해 해외금융상품 등에 투자하는 경우 펀드 단계와 투자자 단계에서 모두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지 못함에 따라⁷⁹⁾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 세액공제 제도가 2005년 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구분	시행 시기	방식
방식 I	2006~2024	펀드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납부세액을 선환급 받아 세전소득 환원 후 투자자 소득 분배 시 원천징수
방식 II	-80)	국세청의 환급절차 없이 펀드가 배당 시 국내와 외국 세율 차이만큼 투자자별 '세전소득'을 고려하여 원천징수
방식 III	2025~	국세청의 환급절차 없이 펀드가 배당 시 국내와 외국 세율 차이만큼 투자자별 '세후소득'을 고려하여 원천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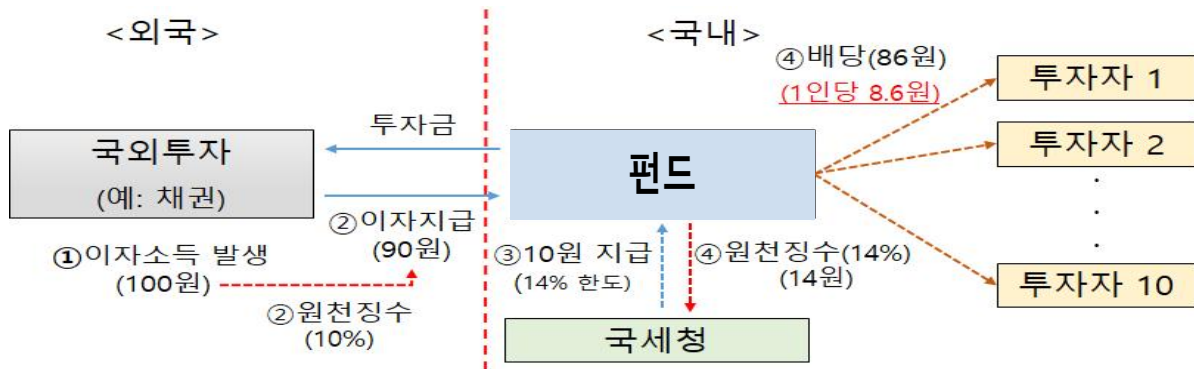
□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연혁은 다음과 같음. 투자자의 펀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식과 관련하여 방식 I 은 펀드의 해외소득에서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을 투자자별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펀드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납부세액을 선환급(국내원천 징수세율 14%

79) ① 펀드 단계에서는 펀드가 납부할 법인세액이 없어(투자신탁의 경우 법인세법상 실체가 없는 도관으로서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고, 투자회사의 경우 투자자에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을 하면 전액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게 되므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됨)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 ② 투자자 단계에서는 외국세액의 납부 주체는 펀드로서 투자자가 아니므로 투자자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불가능하였음.

80) 2021년 세법 개정 당시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부터로 설정하였으나, 이후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이 방식III으로 개정되어, 실제로는 시행되지 못하였음

한도)받아 세전소득으로 환원 후 투자자에게 소득을 분배 시 원천징수하는 방식이었음.

[방식 I 외국납부세액공제 예시]



주: 외국 이자소득세율: 10%, 국내 배당소득세율 14%, 이익의 100% 배당 가정
자료: 기획재정부

방식 I 에 의하면, 외국에서 이자소득 100원이 발생하여 10%를 원천징수하고 90원을 펀드에 송금을 하는 경우, 소득발생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 시 국세청은 외국납부세액 10원을 환급함.

이후, 국내에서 펀드가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세 14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86원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됨으로써 투자자는 국내 세율 14%로 과세됨.

그러나 방식 I 에 대하여, 국외원천소득의 국내 과세여부와 무관하게 외국납부세액을 미리 환급함에 따라 국고로 외국납부세액을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하고,⁸¹⁾ 현행 2단계 절차(先 공제 또는 환급→後 원천징수)가 번거로워 이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81) 면세 국내법인은 국내과세가 없음에도 정부가 외국납부세액을 지원하거나, ISA 계좌(국내세율 9%) 및 연금계좌 내 펀드를 통해 해외투자하는 경우 정부가 외국 납부세액을 일부 보전하는 결과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음. 기획재정부 자료

이에 따른 대응으로서 방식Ⅱ는 ① 간접투자회사·투자신탁이 거주자에 소득을 지급하거나, 투자신탁이 내국법인에 배당 지급 시 국내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투자신탁의 외국납부세액과의 차이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⁸²⁾, ② 그 외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경우⁸³⁾ 투자자인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하여 공제⁸⁴⁾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021년 12월 의결됨.

82) 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호에 따른 투자신탁이익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법인세액을 뺀 금액(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원천징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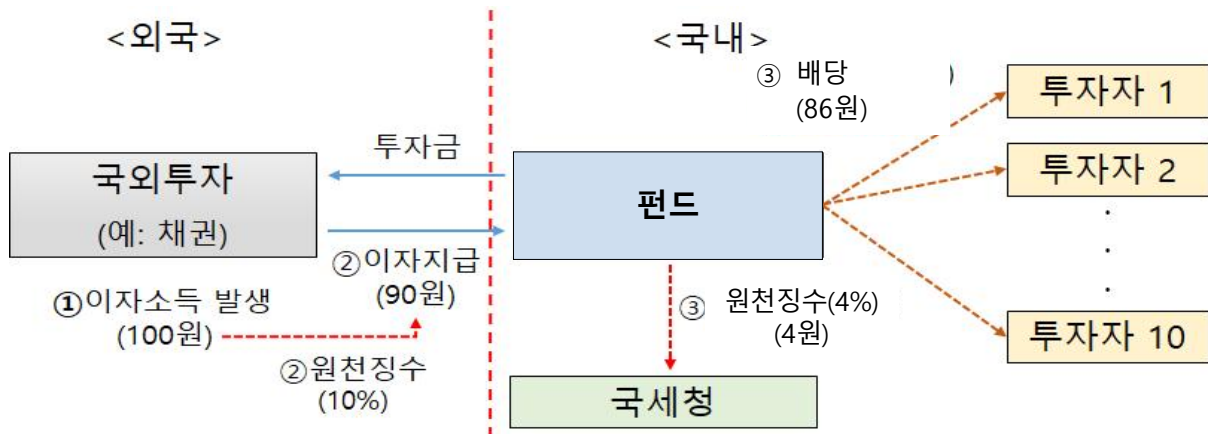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금으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이익"이라 한다)의 금액

83) 투자회사가 법인투자자에 지급하는 소득 등

84) 「법인세법」 (법률 제18590호)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그 소득에 대하여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투자신탁이익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내국법인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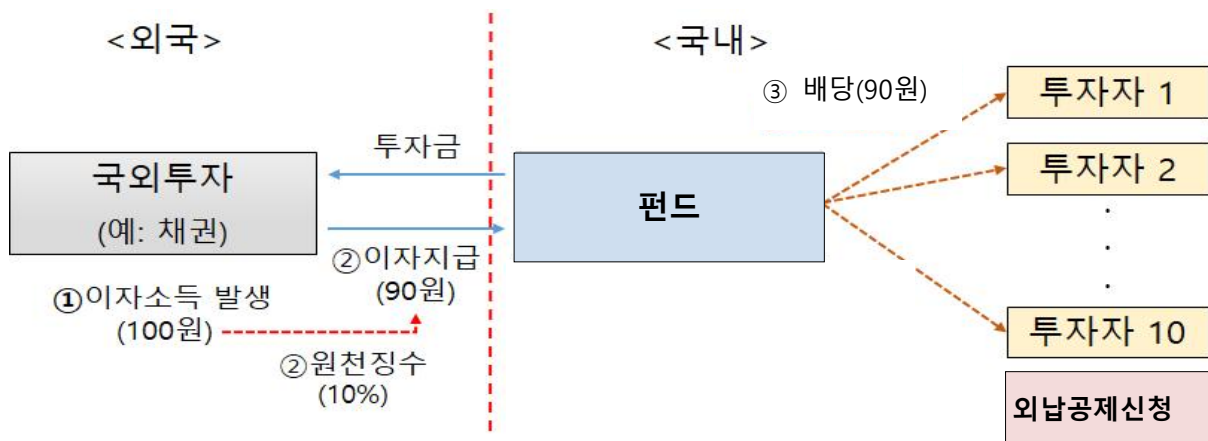
[Ⅱ-①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예시]



주: 외국 이자소득세율: 10%, 국내 배당소득세율 14%, 이익의 100% 배당 가정
자료: 기획재정부

① 투자신탁이 거주자·내국법인 투자자에 지급하는 배당으로서 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제73조제1항 후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위 그림과 동일하게 외국에서 이자소득 100원이 발생하여 10%를 원천징수하고 90원을 펀드에 송금을 하게 되면, 국세청의 환급 절차 없이 펀드가 배당 시 국내와 외국 세율 차이($4\% = 14\% - 10\%$)만큼만 4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86원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됨으로써 투자자는 국내세율 14%로 과세됨.

[Ⅱ-②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예시]



자료: 기획재정부

② 그 외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경우 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외국에서 이자소득 100원이 발생하여 10%를 원천징수하고 90원을 펀드에 송금을 하게 되면, 법인투자자는 해외투자소득을 법인세 신고 시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해외 납부세액은 직접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포함하게 됨.

그러나 방식 II에 따를 때, 금융기관은 투자자별 펀드 소득 발생 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차액을 원천징수하게 되는데⁸⁵⁾,

방식 II

$$\text{원천징수세액} = (\text{투자자별 세전소득} \times \text{원천징수세율}) - (\text{투자자별 외국납부세액})$$

이를 위해서는 개별 펀드·투자자별 외국납부세액과 동 세액납부 전 소득이 계산되어야 하는데, 복수 국가·자산에 분산투자되고 투자자 변동 및 투자자산 배당 등이 수시로 발생하는 펀드의 성격상 업계는 투자자별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세전 기준가격을 만드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된 방식 III(현행, 2025년~)은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위한 원천징수 계산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펀드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원천징수세

85) 참고

방식 I 은 펀드의 해외소득에서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은 투자자별로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펀드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납부세액을 선환급(국내원천징수세율 14% 한도) 받아 세전소득으로 환원 후 투자자에게 소득 분배, 원천징수

액을 펀드 세후 기준가격으로 계산하되, 펀드 세전 기준가 및 실제
외국납부세액으로 계산했을 때(방식Ⅱ)와 동일한 원천징수세액이
나오도록 외국납부세액 감액비율⁸⁶⁾을 설정·적용하여, 조정된 외국
납부세액을 공제하였음.

방식 Ⅲ(현행, 2025년~)

$$\text{원천징수세액} = (\text{투자자별 세후소득} \times \text{원천징수세율}) - (\text{투자자별 조정외국납부세액})$$

현행법은 ①(국내 ≥ 외국원천징수세율) 방식Ⅱ와 방식Ⅲ이 각각
세전 과세표준(100)과 세후 과세표준(90)으로 다른 기준을 택하더
라도 방식Ⅱ와 방식Ⅲ의 원천징수세액이 같게 되도록 방식Ⅲ의 외
국납부세액(10)에 조정비율(1-0.14)을 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방식
Ⅱ와 방식Ⅲ 모두 원천징수세액은 4가 될 수 있도록 시행령상에

86)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③ 법 제57조의2제2
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
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신탁이익의 경우

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frac{\text{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text{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	-	$\text{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	---	--

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1	-	$\text{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	---	--

2.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제1호 외의 소득의 경우

1	-	$\text{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	---	--

규정하였음.

[원천징수세액 산출 방식 비교(국내 ≥ 외국원천징수세율)]

구분	Ⅱ(현행, 세전소득 기준)	Ⅲ(개정안, 세후소득 기준)
해외 배당금 (세전)	100	100
㉠ 외국납부세액 (10%가정)	$\Delta 10$	$\Delta 10$
과세표준	(세전 과세표준) 100	(세후 과세표준) 90
㉡ 국내배당소득세액 (14%가정)	$\Delta 14(=100 \times 0.14)$	$\Delta 12.6(=90 \times 0.14)$
㉢ 외국납부세액공제	10	$8.6[=10 \times (1 - 0.14)]$ (투자자별 조정외국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 (=㉡+㉢)	$\Delta 4$	$\Delta 4$
총 부담세액 (=㉠+㉡+㉢)	$\Delta 14$	$\Delta 14$

②(국내 < 외국원천징수세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조정된 외국납부세액을 산출하여 결과적으로 방식Ⅱ와 방식Ⅲ 모두 원천징수세액은 0이 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음.

[원천징수세액 산출 방식 비교(국내 < 외국원천징수세율)]

구분	Ⅱ(현행, 세전소득 기준)	Ⅲ(개정안, 세후소득 기준)
해외 배당금 (세전)	100	100
㉠ 외국납부세액 (20%가정)	$\Delta 20$	$\Delta 20$
과세표준	(세전 과세표준) 100	(세후 과세표준) 80
㉡ 국내배당소득세액 (14%가정)	$\Delta 14(=100 \times 0.14)$	$\Delta 11.2(=80 \times 0.14)$
㉢ 외국납부세액공제	-	$11.2[=20 \times (0.7 - 0.14)]$ (투자자별 조정외국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 (=㉡+㉢)	0 (∵ 원천징수세액 < 외국법인세액)	0
총 부담세액	$\Delta 20$	$\Delta 20$

구분	Ⅱ(현행, 세전소득 기준)	Ⅲ(개정안, 세후소득 기준)
(=㉠+㉢+㉣)		

또한, 현행법은 위 내용과 함께 원천징수 시 공제되는 조정외국납부세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10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음.⁸⁷⁾

□ 그러나, 실무상 간접투자회사등이 실제 분배⁸⁸⁾한 소득에 상응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중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하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⁸⁹⁾ 및 그 한도의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이는 매년 각 간접투자회사등의 해외 외국납부세액 및 각 투자법인의 일별 외국납부세액은 산출이 가능하나, 투자법인 별 실제 분배된 소득에 대한 원천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어 이와 연관된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임.⁹⁰⁾

[현행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등의 계산의 어려움]

87) 「법인세법」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③ 제1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text{공제한도금액} = A \times \frac{B}{C}$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B: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해당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합계액
C: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88) 간접투자회사등(펀드)이 얻은 해외투자소득을 투자회사에 이론적으로 할당하는 것을 배분, 간접투자회사등(펀드)이 투자회사에 실제로 소득을 지급하는 단계를 분배라고 함.

89) 이는 현행법상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법 제57조의2제2항제2호)”에 상응하는 개념임.

90) 구체적으로 간접투자회사등은 법인투자자에게 통산소득을 지급하나, 공제한도 적용을 위한 외국납부발생국외원천소득의 원천은 구분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보임.

(개정 전) 공제한도 계산

구분	국외원천소득			펀드 지급	국내 소득	과세 표준	산출 세액	공제 한도
	외납발생소득		양도차손					
	(외납세액)	세후(배분)						
금액	(100)	400	△100 ³⁾	300	300	600	120 ¹⁾	?2)

* 주 1) 세율 20% 가정

2) 산출세액 × 국외원천세후소득 / 과세표준 = 120 × ???(구분불가) / 600 = ???

3) 국외주식 투자로 인한 양도차손(△100)에 따라 실제 분배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자료: 기획재정부

□ 이에 따라 개정안은 ①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급받은 소득 기준으로 산출하지 않고 동 법인이 취득한 금융상품과 관련된 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고려하여 계산하고, ②과세표준에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환원(gross-up)하며 ③간접투자회사등이 실제 지급한 소득을 기준으로 법인투자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방식Ⅳ)을 도입하여,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된 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 및 그 공제한도 등의 계산 방식이 실무상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른 간접투자회사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 한도 산식의 변경]

종전	개정(안) - 방식Ⅳ
$\text{공제한도금액} = A \times \frac{B}{C}$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B :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 C: 해당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text{공제한도금액} = A \times \frac{B}{C}$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B :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소득에 대한 제한 삭제)+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 C: 해당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 포함

구체적으로, ① (배분 시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개정안은 현행법 제57조의2의 제목인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를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로 제목을 변경하여 배분 시점에 외국 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려는 것을 명확화하고 있음. 이는 상기된 바와 같이 실무적으로 분배받은 소득의 원천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배분 시점에 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려는 취지임.

②, ③(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 익금 포함 및 공제한도 식의 변경) 개정안은 분배받은 소득에 부수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 및 그 한도의 계산 어려움을 고려하여 공제한도산식 중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과 관련된 제한을 삭제하고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B)⁹¹⁾에 포함시키며,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또한 익금에 포함하여 공제한도금액에 대한 산식을 변경하였음.⁹²⁾

91) 「법인세법」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③ 제1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text{공제한도금액} = A \times \frac{B}{C}$$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B: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해당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합계액

C: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92) 현행 공제한도금액 계산식에서의 B값은 ‘외납세액이 발생한 펀드소득’을 의미하여, 배분 기준 세후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배분 기준 세후소득금액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어려우며, 해당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정보가 정확하다는 보장이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이는 실무적으로 법인투자자에게 분배되는 소득은 국내소득, 외납세액 미발생 국외소득, 양도차손 등이 포함된 소득으로, 해당 소득에 외납세액이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임. 기획재정부 의견

한편, 법인투자자 중 일부 형태(투자신탁)에 대해서는 원천징수⁹³⁾가 이루어져서 정부가 2025년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55)과 같이 원천징수금액을 활용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정부는 이에 대해 원천징수가 없는 투자회사도 신고납부 단계에서 법인세 최종세액이 결정되므로, 법인들에 대해 일관된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또한 「소득세법」은 금융기관이 아닌 납세자가 신고과정에서 한도를 복잡하게 재계산하는 것 자체가

93)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이익”이라 한다)의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③ 법 제5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신탁이익의 경우
 - 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frac{\text{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text{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 - \text{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 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1 - \text{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

부담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공제한도 계산을 최대한 단순화하여 원천징수 공제액을 활용하는 방안을 채택하였으나, 법인세액은 신고납부로 결정되는 점에 착안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을 더하여 세전소득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채택한 것이라는 입장임.

[개정안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등의 계산]

(개정 전) 공제한도 계산

구분	국외원천소득			펀드 지급	국내 소득	과세 표준	산출 세액	공제 한도
	외납발생소득		양도차손					
	(외납세액)	세후(배분)						
금액	(100)	400	△100 ³⁾	300	300	600	120 ¹⁾	? ²⁾

* 주 1) 세율 20% 가정

2) 산출세액 × 국외원천세후소득 / 과세표준 = 120 × ???(구분불가) / 600 = ???

3) 국외주식 투자로 인한 양도차손(△100)에 따라 실제 분배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개정 후) 공제한도 계산

구분	국외원천소득			펀드 지급	국내 소득	과세 표준	산출 세액	공제 한도
	외납발생소득		양도차손					
	(외납세액)	세후(배분)						
금액	(100)	400	△100	300	300	700 (=600 +100)	140	80 ¹⁾

* 주 1) 산출세액 × (간접투자회사지급소득+외납세액) / 과세표준
 = 140 × (300 + 100) / 700 = 80

자료: 기획재정부

□ 다만 개별 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 및 공제 한도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동 제도는 투자자의 과세표준 중에서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간접투자소득에 해당하는 외국납부세액 분만큼을 세액공제하기 위하여 도입 및 운영되었음.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외국납부세액 여부를 불문하여 이를 일괄적으로 간접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포함하고, 이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를 설정할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증가해도 공제 한도가 이와 완벽히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아, 제도 설계상 해당 연도 외국납부세액공제규모가 실제 외국납부세액 규모와 비례성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음.

[개정안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의 외국납부세액 비례성 약화 예시]

공제한도의 계산

사례 1.

구분	국외원천소득			편드 지급	국내 소득	과세 표준	산출 세액	공제 한도	공제 금액
	외납발생소득		양도차손						
	(외납세액)	세후(배분)							
금액	(100)	400	△100	300	300	700	140 ¹⁾	80	80

* 주 1) 세율 및 법인에 대한 한계세율 20% 가정

주 2) 해당 법인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외에 적용되는 특례는 없다고 가정

사례 2.

구분	국외원천소득			편드 지급	국내 소득	과세 표준	산출 세액	공제 한도	공제 금액
	외납발생소득		양도소득						
	(외납세액)	세후(배분)							
금액	(25)	100	200	300	300	625	121	61	20

* 주 1) 세율 및 법인에 대한 한계세율 20% 가정

주 2) 해당 법인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외에 적용되는 특례는 없다고 가정

사례 2.

구분	국외원천소득			편드 지급	국내 소득	과세 표준	산출 세액	공제 한도	공제 금액
	외납발생소득		양도차손						
	(외납세액)	세후(배분)							
금액	(200)	800	△500	300	300	800	160	100	100

* 주 1) 세율 20% 법인에 대한 한계세율 가정

주 2) 해당 법인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외에 적용되는 특례는 없다고 가정

사례1에 비해 사례2는 외국납부세액의 규모가 100에서 25로 75% 감소하였으나, 공제한도는 80에서 61로 23.75%만 감소하여, 개정안에 따르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규모에 공제한도가 완벽하게 비례하여 감소하지 않음. 특히 사례 3과 같이 현행법 제5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이 공제한도보다 큰 법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 증가 규모에 비해 공제한도가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여, 해당 연도 외납세액공제 규모가 실제 외국납부세액 규모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정부는 이에 대해 기존에 확인 가능한 정보(펀드로부터 실제 지급 받은 소득 및 외국납부세액)을 활용하고, 국외원천소득(B)의 과세표준 대응성 등을 감안하였을 때, 세전소득기준으로 환원하여 계산하는 개정안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58

8.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및 정의 명확화(정부안)

현 행	개정안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93) ○ 국내원천 이자소득 ○ 국내원천 배당소득 -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①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 되었으나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 반입되지 않은 금액 ②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등이 해당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 - <신 설> ○ 국내원천 부동산, 선박등임대소득 등 ○ 국내원천 기타소득 -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국내에 있는 자산을 <u>증여</u> 받아 생기는 소득 -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현상금·포상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등	□ 배당소득 및 증여의 범위 명확화 ○ (현행과 같음)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추가 -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위 각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기초로 하여 지급하는 금액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u>현저히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자산을 이전받는 경우로서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의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u>) 받아 생기는 소득 - (현행과 같음)

*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6)

□ 개정안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정의와 관련하여 ① 국내원천 배당소득 범위에 장외파생상품 배당상당액을 추가하고 ② 증여의 정의를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⁹⁴⁾의 기준 그 금액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여 소득의 범주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① 개정안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중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위 각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기초로 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여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근 TRS 거래⁹⁵⁾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국내주식의 주주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고, 외국증권사는 국내주식에 대한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이 외국증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배당금상당액을 국내원천소득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음.

9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95) TRS (Total Return Swap) : 장외파생상품중 하나로, 기초자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보유한 TRS 판매인이 약정된 수수료를 수령하는 대가로 TRS 매수인에게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보상을 이전하여 마치 TRS 매수인이 경제적으로 기초자산을 보유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거래효과를 총칭함, 기획재정부 자료

[TRS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 결과]

제목 : 청구법인이 외국투자자에게 국내법인 상장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왑(TRS) 상품을 판매하고 그에 따라 외국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상장주식 가격변동분, 배당금 등 모든 이익' 중 배당금을 수령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외국투자자를 배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청구법인을 이를 실제지급하는 자로 보아,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

청구인	처분청
■ 파생상품소득의 구성요소별 소득구분은 파생금융상품 과세체계에 맞지 않음 (모든 손익은 외국증권사의 사업소득) ■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거래형식 부인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비정상적 거래에 해당하여야 하나, - 쟁점거래는 합법적인 거래로 단순히 조세 감소로 조세회피 목적 거래라 할 수 없음	■ 모든 파생금융상품소득에서 발생하는 이익 전체를 하나의 소득구분으로 과세하는 것이 과세체계의 원칙이 아님 ■ 대법원 판례에서 수익적 소유자의 독자적 의미 및 판단기준을 제시 - 쟁점거래는 의결권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분리한 거래로 쟁점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외국증권사임

결정요지 : ① 청구법인의 국내법인 상장주식 소유에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② 외국투자자는 레버리지 투자 등 합리적 목적으로 TRS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충분하며 조세회피목적으로 TRS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결정: 총수익스왑상품에 대한 배당금에 대해 외국투자자를 수익적 소유자로, 청구법인을 실제 지급하는 자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및 조세심판원 결정 자료 재가공

□ 그러나 TRS 계약의 성질상 사실상 소유에 관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결정에 따른 경우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음.⁹⁶⁾ 또한 미국의 경우 TRS와 같이 지급(payment)가 배당을 참조하거나 배당을 반영하는 거래 등을 배

96) 본건 TRS 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국내법인으로부터 배당이 이루어진 날에 같은 금액을 외국투자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외국투자자는 위 배당금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그대로 보유함에도 TRS 계약에 따른 이익금의 지급이라는 법적형태를 취함으로써 배당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TRS 거래가 단지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쟁점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BKL Legal Update, 2024.6.27.

당등가(divident equivalent) 규정으로 다루어, 배당과 유사한 금액이 외국인에게 지급되면 원칙적으로 30%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⁹⁷⁾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였음.

□ 이에 개정안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위 각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기초로 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소득의 실질에 따라 과세가 적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는 측면이 있음.

□ ② 개정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 받아 생기는 소득’에 대한 정의를 ‘국내에 있는 자산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⁹⁸⁾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의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 받아 생기는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과 관련한 증여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민법」상의 증여의 개념으로 해석하여 ‘재산의 무상이전’으로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⁹⁹⁾ 이와 관

97) Extension of the Phase-in Period for the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of Section 871(m), Notice 2024-44

9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련하여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법률상의 용어 해석은 해당 조세법률의 정의규정을 가장 우선시하며, 동일한 성격의 법령상의 정의 규정, 관련 법령상의 정의 규정을 바탕으로 용어를 해석하고 있어, 증여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정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일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서 상속세법상 증여의 개념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준용한 해석은 과도하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음.¹⁰⁰⁾

- 이에 개정안은 동법상의 증여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에 대한 정의를 인용함을 명시함으로써 외국법인의 기타소득 내 증여의 의미를 명확화하고, 현행 규정의 모호성을 활용하여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과세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문 의 처

02)6788-5158

99) 다국적 기업의 사업구조 및 지배구조 개편과정에서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 간 국내주식을 저가 양도함에 따라 양수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당국이 「법인세법」제 93조 제10호 다목 규정을 적용해 '외국(양수)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주식 저가양수 이익에 대해 과세한 사례에 대해, 납세자는 「민법」상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증여의 개념을 준용해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 간 국내주식 저가양수 이익'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한 사례가 있음. 국세청 자료 재가공

100) 조심2011서669 결정

9.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제출시 과태료 신설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신 설>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자료제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신설 (§94의2④ 및 §124②)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기본 현황, 외국 본사현황 및 국내 다른 지점 현황, 국내 거래처 현황 등 -(과태료 부과 대상) 제출 기한 내 미제출 및 거짓 제출 -(시정 요구)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거짓 자료의 시정 요구 가능 (§94의2④) -(과태료 부과 금액) 최대 1,000만원* 부과 (§124②) *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6)

□ 개정안은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자료제출 의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외국법인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현행법¹⁰¹⁾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연락사무소에 대한 자료제출의무를 두어 외국법인연락사무소 기본사항, 외국 본사 및 국내 다른 지점 현황, 국내거래처 현황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101) 「법인세법」

제94조의2(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연락사무소”라 한다)를 국내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황 자료를 그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법인연락사무소는 제121조제5항 본문에 따라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 제출에 관하여는 제121조제5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로서 현행법 제94조에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¹⁰²⁾, 동법 제109조제2항¹⁰³⁾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102)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1.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 가. 외국법인 명의의 계약
 - 나. 외국법인이 소유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는 자산의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
 - 다. 외국법인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
 2.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외국법인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 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외국법인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활동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한다.

1.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라 한다)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해당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할 것
 - 나.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가목의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상호 보완적일 것
2.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3) 「법인세법」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②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2개월

을 가지게 되었을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내사업장 설치 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유무는 법인세 과세 여부 및 방식에 결정적인 요소로,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인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국내에서 과세가 가능함.¹⁰⁴⁾ 이에 따라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등의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인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가 불가능함.

해당 규정은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된 규정으로, 실질이 국내사업장임에도 연락사무소로 등록하여 조세회피를 하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그러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에 대한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별도의 제재 수단이 없어 세원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의 취합이 어려운 상황임.

-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나 연락사무소로 등록하는 외국법인들의 과세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이에 개정안과 같이 연락사무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다.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3. 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 있는 자산의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국내사업의 목적 및 종류와 국내자산의 종류 및 소재지
5. 국내사업을 시작하거나 국내자산을 가지게 된 날

104)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 귀속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하지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각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함.

과 규정을 신설할 경우, 외국법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자료수집으로 과세 사각지대의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특히 현재 고정사업장을 연락사무소로 위장하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검증 및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락사무서 현황명세서의 제출 의무화로 이러한 연락사무소의 위장 운영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현황명세서에 대한 제출의무 위반 시의 과태료 규모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 확보 측면과 현황명세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경중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과태료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¹⁰⁵⁾

문 의 처

02)6788-5158

105)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법상 장부등의 제출의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기간이 정한날부터 1일 평균 수입금액의 1천분의 3범위에서, 평균수입금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일당 5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국세기본법」

제85조의7(이행강제금) ③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까지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평균수입금액이 없거나 평균수입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일당 5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0. 외국법인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 의무신설(정부안)

현 행	개정안
☐ 외국법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98의6) ○ (제한세율 적용 신청 대상)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 ○ (제출 서류 및 대상) -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인 경우 :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함께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제출의 보완 등) - 원천징수의무자의 신청서의 누락 미비에 대한 보완 요구 허용 - 신청서 등의 미제출로 실질귀속자 파악 불가 시 제한세율 미적용 ○ (경정청구) - 제한세율 미적용자의 경정청구 허용 ○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 규정 * 원천징수 납부기한(지급일 다음달 10일) 다음날부터 5년 ○ <신 설>	☐ 신청서의 제출 의무 신설 ○ (현행과 같음) ○ 원천징수의무자의 제출 의무 신설 - (제출서류)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지구로부터 받은 신청서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 (제출대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 (제출기한) 해당 국내원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

*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6)

□ 개정안은 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과거에는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닌 외국법인이 부당하게 조세조약상의 혜택을 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2011년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신청서등’)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¹⁰⁶⁾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¹⁰⁷⁾ 원천징수의무자제출받은 신청서 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¹⁰⁸⁾

106) 「법인세법」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98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07) 「법인세법」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아 이를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8) 「법인세법」

□ 개정안은 이에 대해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신고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신고서를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③ 해당 국내원천소득일이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법령은 신청서 및 국외투자기구신고서의 보관기간을 원천징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과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받은 서류 일체를 관할 세무서에게 제출할 경우 세원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특히, 최근 외국법인에 지급되는 수동소득은 증가하고 있으나 원천징수 실효세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법인이 제3국을 이용하여 거래구조를 설계하는 등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국내 과세권을 회피한 결과라는 지적이 있음.¹⁰⁹⁾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된 신청서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98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22년,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

[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신고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총지급액	세액	총지급액	세액	총지급액	세액	총지급액	세액
비거주자	15,229	1,751	18,840	2,200	18,561	2,084	12,898	1,502
외국법인	532,965	52,820	693,092	68,728	689,438	68,155	706,395	63,387
합 계	548,194	54,571	711,931	70,929	702,388	70,238	719,290	64,889
실효세율	10.0		10.0		10.0		9.0	

자료: 국세통계 연보

□ 이에 따라 개정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받은 외국법인의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해외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징수절차를 강화하고 조세조약을 악용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며 세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58